www.kipf.re.kr

세법연구 24-07

주요국의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권성오·홍성희·김민경

2024.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권 성 오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홍 성 희 공인회계사

김 민 경 선임연구원

목 차

Ⅰ. 서론 ····· 1

Ⅱ. 상속·증여 과세제도 개관 ····· 3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3
가. 상속·증여로 증가한 부에 대한 과세 ····· 3
나.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 7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 12
가. 취득가액 승계과세(Carry-over basis) ····· 12
나. 취득가액 상향과세(Step-up in basis) ····· 15
3. 소결 ····· 18
가.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 18
나.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 자산 과세 현황 ····· 20

Ⅲ. 우리나라의 상속·증여 과세제도 ····· 23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23
가. 상속 시점의 과세제도 ····· 23
나. 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29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 33
가. 양도소득세의 개요 ····· 33
나.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별도 규정 ····· 38
3. 상속·증여세 과세 현황 ····· 40

Ⅳ. 상속·증여세 비운영 국가의 상속·증여 과세제도 ····· 47
1. 캐나다 ····· 47
가. 배경 ····· 47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49
다. 상속·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 시 자본이득 과세제도 ····· 61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 61
2. 호주 ····· 62
가. 배경 ····· 62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67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 69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 75
3. 스웨덴 ····· 76
가. 배경 ····· 76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82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 82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 89
4. 노르웨이 ····· 90
가. 배경 ····· 90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92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 93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 97
5. 국제비교 ····· 98
가. 배경 ····· 98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101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 102

V. 결론 및 시사점 ····· 113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113
가. 상속·증여자산에 대한 과세 ····· 113
나.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 116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 119

참고문헌 ····· 122

표 목차

〈표 Ⅱ-1〉 OECD 회원국의 부의 증가에 대한 과세 ····· 7
〈표 Ⅱ-2〉 OECD 회원국의 상속재산 양도 시 자본이득 과세 현황 ····· 17
〈표 Ⅱ-3〉 상속·증여재산 미실현이익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 21

〈표 Ⅲ-1〉 상속세 과세체계 ····· 25
〈표 Ⅲ-2〉 상속세 세율 ····· 28
〈표 Ⅲ-3〉 증여세 과세체계 ····· 30
〈표 Ⅲ-4〉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 35
〈표 Ⅲ-5〉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37
〈표 Ⅲ-6〉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 ····· 37
〈표 Ⅲ-7〉 한국의 상속·증여 세수액 비중(2014~2023년) ····· 40
〈표 Ⅲ-8〉 총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상속세 결정 현황(2023년) ····· 41
〈표 Ⅲ-9〉 상속세 결정 현황(2014~2023년) ····· 42
〈표 Ⅲ-10〉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23년) ····· 43
〈표 Ⅲ-11〉 총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자산 종류 비중(2023년 기준) ····· 45
〈표 Ⅲ-12〉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자산 종류 비중(2023년 기준) ····· 46

〈표 Ⅳ-1〉 캐나다의 개인소득세율(2024년 기준) ····· 52
〈표 Ⅳ-2〉 캐나다의 주요 자산 유형별 자본이득 과세 현황 ····· 60
〈표 Ⅳ-3〉 캐나다의 세목별 세수 현황(1967~1977년) ····· 62
〈표 Ⅳ-4〉 호주의 소득세율(2024~25 과세연도) ····· 72

〈표 Ⅳ-5〉 호주의 세목별 세수 현황(1974~1984년) ····· 75
〈표 Ⅳ-6〉 스웨덴의 상속·증여세제 변천과정 ····· 79
〈표 Ⅳ-7〉 스웨덴의 세목별 세수 현황(2000~2010년) ····· 89
〈표 Ⅳ-8〉 노르웨이의 세목별 세수액(2009~2019년) ····· 97
〈표 Ⅳ-9〉 주요국의 상속세제 비운영 배경 ····· 100
〈표 Ⅳ-10〉 주요국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문제 ····· 102
〈표 Ⅳ-11〉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요(일반사항) ····· 105
〈표 Ⅳ-12〉 주요국의 상속·증여에 대한 자본이득세 특별 규정 ····· 111

Ⅰ. 서론

□ 최근 10년간 상속세가 과세되는 피상속인의 비중은 2014~2020년 중에는 전반적으로 3% 미만이었으나 202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6.82%를 차지함[1)]

○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급격한 증가는 2021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국세청은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자료 설명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속세 납세인원 및 재산가액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설명함[2)]

□ 정부와 의회는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변경, 상속공제 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임

○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자녀공제금액의 확대 및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안을 제시함[3)]

- 현행 50%의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함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함[4)]

-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취

---

1) 국세통계연보, 「6-2-3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5. 1. 8.
2) 국세청, 2023, p. 9
3) 기획재정부, 2024, p. 20, pp. 62~63
4) 기획재정부, 2025

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함
-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하여 10억원 이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개정함

□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음
○ 2024년 9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개인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가업상속 시 상속세는 자본이득세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임을 발표한 바 있음[5)]
○ 상속·증여세제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의 상속·증여자산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음

□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와 양도소득세제의 개편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상속·증여 시 과세제도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개관에 대해 기술함
○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과세제도 및 현황과 양도소득세 개요,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별도 규정에 대해 기술함
○ 제Ⅳ장에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운영하지 않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의 상속·증여 시 과세제도,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별도 규정에 대해 기술하고 각 국가의 내용을 비교함
○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기술함

---

5) 조선비즈,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투트랙으로」, 2024. 9. 23.,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20/2024092000015.html, 검색일자: 2025. 2. 21.

Ⅱ. 상속·증여 과세제도 개관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증여 시점에는 ①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② 이전되는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상속인 또는 수증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부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의 증가에 대해 과세됨

○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유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미실현이익에 과세됨

가. 상속·증여로 증가한 부에 대한 과세

□ 다수의 OECD 회원국은 상속 또는 증여로 증가한 부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며 일부 국가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Ⅱ-1〉 참조)[6]

○ 총 38개의 OECD 회원국 중 24개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하며, 이 중 21개 국가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영국임

○ 증여 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체코,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임

-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가까운 가족[7]간 증여는 비과세함[8]

---

6) OECD, 2021, Table 3.1; IBFD, 2024, 각 국가별 *Country Tax Guide –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 영국의 경우 증여로 증가한 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함[9)]

○ 콜롬비아는 상속·증여로 증가한 부를 개인소득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단일세율로 과세함[10)]

□ 상속·증여로 증가한 부에 과세를 하는 경우 조세 형평성의 실현, 생전 과세되지 못한 자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 이점이 있음

○ 상속·증여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 같이 과세함에 따라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며, 누진세율 적용 시 수직적 형평성도 제고함[11)]

○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자본이득 비과세 혜택으로 과세되지 않다가 상속·증여 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처음으로 가능하게 됨[12)]

- Gale and Slemrod(2001)은 미국에서 상속세가 소득세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하며, 특히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함

□ 또한, 상속·증여로 증가한 부에 과세 시 기회 균등(Equality opportunity)을 제고하고, 세수가 재분배되는 경우 부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함

○ OECD(2021)는 상속·증여로 증가한 부에 과세하는 것은 개인 간 평등한 출발선

---

7) 체코는 최소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한 3촌 이내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부터의 증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라트비아는 3촌 이내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부터의 증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리투아니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함

8) IBFD, 2024, 각 국가별 *Country Tax Guides –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아이슬란드는 자료의 한계로 가족 간 증여에 대해 비과세하는지 확인되지 않음

9)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capital-gains-tax/gifts; https://www.gov.uk/inheritance-tax/gifts; 검색일자: 2025. 2. 17.

10) 콜롬비아는 상속·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자본이득으로 소득을 분류하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차익이 아닌 상속·증여재산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15%의 단일세율로 과세함 (자료: IBFD, *Colombia - Individual Taxation, sec. 6, Country Tax Guid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cta_co_s_1., 검색일자: 2025. 2. 10.)

11) OECD, 2021, p. 43

12) OECD, 2021, p. 61

을 제공하여 기회균등을 높이고,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13]

- Alstott(2007) 및 Boadway et al.(2010)에 따르면 자산을 무상 이전받은 자는 개인적 노력과 무관하게 유리한 출발점을 가지게 되며, 이는 능력과 노력이 유사한 사람들 간의 기회균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14]

○ Cowell et al.(2017)은 상속세 부과 시 장기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즉각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으며, Akgun et al.(2017)은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함[15]

□ 하지만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개인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어 노동 공급이 왜곡되거나 소득 조정의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며, 국경 간 부의 이전 시 과세권 할당을 고려해야 함[16]

○ 상속 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상속인에게 매우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납세자가 소득의 과세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상속·증여를 받는 해에 소득을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축소할 수 있음

○ 개인소득세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국가 간 과세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과세 복잡성을 증대시킴

○ 추가로, 부의 무상 이전이 「소득세법」상 소득의 정의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17]

□ 한편, 상속·증여로 발생하는 부의 증가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OECD 회원국은 총

---

13) OECD, 2021, p. 42
14) OECD, 2021, p. 41
15) OECD, 2021, p. 44
16) OECD, 2021, p. 82
17) Stevanato, 2021, Chapter 7

13개국으로 10개국은 상속·증여세를 도입하였다가 폐지하였으며, 3개국은 상속·증여세를 도입하지 않음[18)]

○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국가는 멕시코(1961년 폐지), 캐나다(1972년 폐지), 호주(1979년 폐지), 이스라엘(1980년 폐지), 뉴질랜드(1992년 폐지), 슬로바키아(2004년 폐지), 스웨덴(2004년 폐지), 오스트리아(2008년 폐지), 체코(2014년 폐지), 노르웨이(2014년 폐지)임

○ 상속·증여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임

□ OECD(2021)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상속세 폐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19)]

○ 상속세제에 대한 정치적 지지 부족은 낮은 면세점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진 점과 주로 부유층 납세자가 세금 절세계획으로 세부담 축소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속세제의 정당성을 훼손한 이유로 발생함

○ 이외에 높은 세무행정비용 대비 낮은 세수, 경제 활성화 목적을 위한 세제개혁의 사유도 상속세 폐지에 영향을 미침

-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스웨덴, 체코는 높은 행정비용 대비 낮은 세수가 상속세 폐지에 영향을 미침
- 미국, 이탈리아, 슬로바키아는 경제성장을 위한 세제개혁의 하나로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며, 미국, 이탈리아는 상속세를 재도입함

18) OECD, 2021, Table 3.1
19) OECD, 2021, p. 73

〈표 Ⅱ-1〉 OECD 회원국의 부의 증가에 대한 과세

상속 시점	증여 시점	국가명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벨기에, 칠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1],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미국 (21개국)
	개인소득 과세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2개국)
	비과세	영국[2] (1개국)
개인소득 과세	개인소득 과세	콜롬비아[3]
비과세	개인소득 과세	라트비아, 체코 (2개국)
	비과세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11개국)

주: 1) 포르투갈은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인지세(stamp duty)를 부과하나 상속·증여로 증가한 부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본 표에서는 상속·증여세 과세대상 국가에 포함함
2) 영국은 증여 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자본이득 과세를 하나 사망 이전 7년 동안의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과세함
3) 콜롬비아는 상속·증여재산가액을 개인소득 중 자본이득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세율로 과세함
자료: OECD, 2021, Table 3.1; IBFD, 각 국가별 *Country Tax Guides –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202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 상속·증여로 피상속인(증여자)의 자산이 상속인(수증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증여자)이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할 필요가 있음

□ 상속·증여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으로는 상속·증여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간주실현과세(Transfer-as-realisation basis)와 상속·증여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이 있음

1) 자본이득 간주실현과세(Transfer-as-realisation basis)[20]

□ 자본이득 간주실현과세는 상속(증여)으로 자산 이전 시 피상속인(증여자)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증여) 당시 시가와 자산을 이전하는 자의 취득가액 간 차액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함

○ 자산의 유상 이전과 무상 이전 간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임

□ 자본이득 간주실현과세는 자본이득 과세의 무기한 연기 방지, 자산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음[21]

○ 자본이득 과세이연이 허용되는 경우 자산이 처분되지 않는 한 미실현이익에 과세되지 않아 자본이득 과세의 무기한 연기가 가능함

○ 납세자가 사망 시점에 미실현이익에 과세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자산을 사망시점까지 보유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킬 것임[22]

□ 소득 귀속의 관점(income attribution rule)에서 볼 때 상속·증여 시 피상속인(증여자)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 간주실현과세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23]

○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가치 상승은 소유자의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도 해당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임

- 소득 귀속 관점에 따르면 소득은 자산을 향유하는 자가 아닌 자산을 통제하는 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 취득가액은 자산을 구매한 자의 투자내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수증자)에게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반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세율이 낮은 상속인(수증자)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피상속인(증여자)이 세금을 부

---

20) OECD, 2021, 3. 12.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
21) OECD, 2021, p. 121
22) Schmalbeck et al., 2017, p. 149
23) Dodge, 2001, p. 434

담하기 때문에 적정 납세자에게 적정 세율로 과세됨[24]

□ 반면 간주실현과세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경우 하나의 거래 시점에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어 세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음[25]

○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국가의 경우 상속·증여 시점에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가 동시에 과세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큼

-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가장 불편한 시기(즉, 애도하는 사망일)”에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동시 부과에 대한 부담으로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이 있을 수 있음[26]

○ 상속 시 유동성 부족으로 세금 납부를 위해 가업상속자산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27]

□ 간주실현과세는 소득실현 원칙의 위배, 재산 평가가 어려운 문제점도 존재함[28]

○ 상속은 자본이득 과세대상인 “양도 또는 교환”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이 실현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상속 시 자본이득 과세는 「소득세법」상 소득실현 원칙에 위배됨

○ 양도가액은 상속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특히 비상장주식, 농장, 개인재산의 평가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함

- 평가는 상속 시점에 한 번만 실행되며, 현재 상속세 과세 시에도 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유사함[29]

□ OECD 회원국 중 캐나다는 상속·증여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하고, 덴마크·헝가리

---

24) Schmalbeck et al., 2017, p. 149
25) OECD, 2021, chapter 3.12.2
26) Duff, 2005, p. 96
27) CRS, 2021, p. 2
28) Schmalbeck et al., 2017, p. 111, pp. 115~116
29) Dodge, 2001, p. 434

는 상속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하며[30], 영국·호주는 증여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남[31]

○ 캐나다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면서 상속·증여재산의 미실현이익에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도입함

- 캐나다 하원은 미실현이익의 무기한 과세연기를 제한하기 위해 상속·증여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32]

○ 덴마크, 헝가리는 부의 증가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며, 미실현이익에도 상속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함[33]

- 덴마크는 원칙적으로 상속 시점에 피상속인의 미실현 자본이득을 과세하지만, 가업상속자산과 보석·차량·미술품은 예외규정을 두어 상속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음
- 헝가리는 무형자산에 한해 상속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음

○ 영국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자본이득을 과세함[34]

- 단, 배우자, 자선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음

○ 호주는 상속 시 피상속인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자본이득 과세이연을 허용하나 증여의 경우 증여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함[35]

---

30) OECD 보고서에서는 상속 시점의 자본이득 과세만 기술하고 있어, 조사국에 해당하지 않는 덴마크, 헝가리의 증여 시점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기술하지 않음

31) OECD, Table 3.12; IBFD, 각 국가별 *Country Tax Guides –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2024.

32) Duff, 2005, p. 98

33) OECD, 2021, p. 120

34)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capital-gains-tax/gifts, 검색일자: 2025. 2. 17.

35) 호주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s.128.15; s.112.20

2) 자본이득 과세이연[36]

□ 자본이득 과세이연은 상속·증여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향후 상속·증여 자산의 양도 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소득의 실현 여부에 중점을 두어 소득이 실현될 때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관점임

□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세부담이 발생하므로 납세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단, 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장례비용 등 각종 비용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유동성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는 한계가 있음[37]

□ 자산이 평가절상된 상태로 사망 시점까지 보유하도록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으며 미실현이익 과세의 무기한 연기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38]

□ 자료 활용이 가능한 OECD 회원국(총 27개국[39]) 중 상속재산의 자본이득을 과세이연하는 국가는 24개국[40]으로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 대다수는 자본이득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41]

○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상속 시점에 상속재산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36) OECD, 2021, 3.12.2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37) JCT, 1979, p. 15

38) JCT, 1979, p. 13

39) OECD 회원국 중 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 체코, 뉴질랜드는 자본이득세제가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폴란드,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는 OECD의 2021년 보고서에서 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며, 자료의 한계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40) 여기에는 취득가액 상향조정(Step-up in basis)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도 포함됨. 즉, 취득가액 상향조정 과세는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조정하여 향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 시 자본이득에 비과세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본이득 과세이연으로 볼 수 없으나 상속 시점에 피상속인의 미실현이익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시점의 과세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이득 과세이연 국가로 분류함

41) OECD, 2021, Table 3.12, p. 121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42][43]

□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 시 자본이득이 과세되며,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 승계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 승계과세(Carry-over basis)와 취득가액 상향과세(Step-up in basis)로 구분됨

○ 두 가지 과세방법은 피상속인(증여자)이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미실현 이익의 과세 여부에 차이가 있음

가. 취득가액 승계과세(Carry-over basis)

□ 취득가액 승계과세는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것임[44]

○ 피상속인(증여자)이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미실현이익이 상속인(수증자)에게 이전되어 피상속인(증여자)이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증가한 총 자산가치에 대해 과세됨

○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이고, 소득세는 이익의 실현에 대한 과세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존재함[45]

□ 생전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 사망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동일하게 과세함에 따

---

42) OECD, 2021, Chapter 3.12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

43) OECD의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2021)에서는 OECD 회원국의 상속재산의 양도 시 자본이득 과세현황만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 장에서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재산 양도 시 과세현황은 상속재산 양도에만 한정하여 기술함. OECD 회원국 중 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 체코, 뉴질랜드 총 5개국은 자본이득세제가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폴란드,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총 6개국은 OECD(2021) 보고서에서 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44) OECD, 2021, Chapter 3.12.1

45) Zelenak, 1993, p. 364

라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46]

○ 사망 시점까지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양도 시 자본이득에 과세되므로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과세는 생전 양도와 동일함

□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취득가액 승계과세는 간주실현과세와 달리 재산 평가 및 유동성 문제가 없음[47]

○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증여 시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취득가액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48]

○ 특히 상속의 경우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자의 사망으로 취득가액을 파악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자료의 전산화로 취득가액 입증의 어려움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 OECD 회원국 중 주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들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을 과세함(Carry-over basis)[49]

○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 중 캐나다, 라트비아를 제외한 호주,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총 7개국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 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속세를 과세하는 국가 중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스위스 총 8개국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피상속인의 미실현 이익도 포함해 자본이득을 과세함

---

46) JCT, 1979, p. 13
47) Dodge, 2001, p. 434
48) OECD, 2021, Chapter 3.12.2
49) OECD, 2021, Table 3.12

□ 덴마크, 핀란드는 자산 유형별로 상이한 취득가액 기준을 적용함

○ 덴마크는 원칙적으로 상속 시점에 간주실현방식에 의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나 가업상속자산에 한해 취득가액 승계방식에 의한 자본이득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함

- 일반자산은 간주실현방식에 의해 상속 시점의 시가로 과세하므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별도의 취득가액 특례규정이 불필요함

○ 핀란드는 일반 상속재산은 상속 시점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조정하나 가업상속자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을 과세함[50]

-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51] 가업상속자산의 상속세 과세금액은 장부가액의 40%임[52]

□ 미국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기준이 상이하며, 증여 시에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가 승계함[53]

○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로 상향 조정함[54]

○ 증여의 경우 부유층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증여의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 시점까지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보임[55]

---

50) OECD, 2021, p. 120

51)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en/About-us/contact-us/forms/filling-instructions/9-capital-gain-or-capital-loss—instructions/, 검색일자: 2025. 2. 10.

52)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 시점의 시가로 하나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상속 자산은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의 40%만 상속세를 부과함 (자료: IBFD, *Finland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6.1 Inheritance Taxes, 2025; PWC, https://www.pwc.fi/fi/julkaisut/tiedostot/western-europe-aligned-tax-treatment-family-business-transfer.pdf, p. 4, 2015. 4.)

53) 미국 내국세법(IRC), 제1015조

54) 미국 내국세법(IRC), 제1014조

55) Adams(1921)에 따르면 부유층들이 재산을 가족구성원에게 증여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소득을 분할하는 조세회피를 함. 이러한 증여에 대해 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거나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과세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어떠한 경우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추후 매각할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는 반드시 원래 취득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음(자료: Adams, 1921, p. 534; Geu, 1993, p. 36 재인용)

나. 취득가액 상향과세(Step-up in basis)

□ 취득가액 상향과세는 취득가액을 상속·증여 시점의 시장가액으로 조정하여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것임

○ 피상속인(증여자) 입장에서는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음

○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완전히 비과세됨[56]

□ 상속·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조정은 이중과세 방지,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이유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임

○ 사망 시 이전된 자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이미 상속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의견에 따라 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임[57][58]

○ 또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피상속인의 미실현이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 보완해주기 때문에 취득가액 상향 조정을 정당화하는 의견이 있음[59]

○ 미국은 1976년 취득가액 상향과세에서 취득가액 승계과세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부재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취득가액 승계과세로의 전환 실패에 영향을 미침[60]

□ 취득가액 상향과세는 세수 손실, 부정적인 재분배 효과, 자산의 동결효과 문제가 발생함

○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상속·증여세 면세점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미실현

---

56)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 중 취득가액을 상속 시점 시가로 조정하는 국가는 라트비아가 유일함

57) Schmalbeck et al., 2017, pp. 115~116; Zelenack, 1993, p. 364

58) 미국의 내국세법 제정 시 체계를 정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Thomas S. Adams 교수는 사망으로 이전된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것에 대해 이미 상속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음(Schmalbeck et al., 2017, Note 43, p. 115)

59) CRS, 2021, p. 1

60) Schmalbeck et al., 2017, p. 135

이익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상속세 및 자본이득세 모두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61]

- 특히 증여는 이전 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증여세 면세점 이하 금액 자산을 이전하고, 취득가액이 상향 조정되어 미실현이익에 과세되지 않는 조세회피가 가능함[62]

○ 생전 자산을 양도한 자는 자본이득세와 향후 양도차익을 현금성자산이나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상속 시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생전 자산을 양도한 자와 양도하지 않은 자 간에 수평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63]

○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사망 시점까지 자산을 보유하고 상속하면 취득가액이 상향 조정되어 자본이득에 비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자산의 매각을 보류할 유인을 제공함[64]

□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회원국은 주로 취득가액 상향과세를 적용하나 취득가액 승계과세를 적용하는 국가 수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65]

○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칠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한국,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 총 12개국은 상속 시점의 공정가치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본이득을 과세함

-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국가는 8개국임

○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 중 라트비아만 유일하게 취득가액 상향과세를 적용함

- 따라서, 라트비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음

---

61) OECD, 2021, p. 121
62) Dodge, 2001, p. 432
63) OECD, 2021, p. 121
64) Taxnotes, 1976, p. 23
65) OECD, 2021, Table 3.12, p. 121

□ 덴마크, 헝가리는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상속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나 일부 자산은 상속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 시점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조정함[66]

○ 덴마크는 미술품, 보석, 차량, 개인용 물품에 대해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본이득을 과세하며,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과세하지 않음

○ 헝가리는 무형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을 상속 시점 시가로 상향 조정하여 자본이득을 과세하며,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과세하지 않음

〈표 Ⅱ-2〉 OECD 회원국의 상속재산 양도 시 자본이득 과세 현황[1)]

구 분	상속세 과세국가	상속세 비과세 국가
취득가액 승계 (Carry-over basis)	덴마크[2)], 핀란드[3)],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취득가액 상향조정 (Step-up in basis)	칠레, 덴마크[2)], 핀란드[3)], 프랑스, 헝가리[4)], 한국,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5)]	라트비아

주: 1) 조사대상 국가 중 자본이득세제를 운영하지 않는 5개국(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 체코, 뉴질랜드)과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가 있는 6개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폴란드, 튀르키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2) 덴마크는 원칙적으로 상속 시점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본이득을 과세하나 가업상속 주식에 한해 취득가액 승계기준을 적용하며, 보석·차량·미술품은 상속 당시 시가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함
3) 핀란드는 원칙적으로 상속 당시 시가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나 가업상속 주식에 한해 취득가액 승계기준을 적용함
4) 헝가리는 원칙적으로 상속 시점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본이득을 과세하나 무형자산은 상속 당시 시가로 취득가액을 상향조정함
5) 미국은 증여재산의 양도 시 자본이득 과세이연을 적용함
자료: OECD, 2021, Table 3.13.의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수정

66) OECD, 2021, p. 120

3. 소결

가.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는 ①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와 ② 이전되는 자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구분할 수 있음

○ 상속인 또는 수증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부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의 증가분에 대해 과세됨

○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유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미실현이익에 과세됨

□ 무상 이전되는 자산가액은 상속·증여 시점에 상속·증여세 또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상속·증여로 증가한 부에 과세함에 따라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생전 과세되지 않은 자산의 미실현이익에 과세함에 따라 소득세의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음

○ 단,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어 노동공급을 왜곡하거나 소득조정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도 존재함

□ 무상 이전되는 자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는 미실현이익 과세 여부 또는 과세 시점에 따라 간주실현과세(Transfer-as-realisation), 취득가액 승계과세(Carry-over basis), 취득가액 상향과세(Step-up in basis)로 구분됨

○ 상속·증여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 간주실현과세(상속·증여 시점에 자본이득 과세)
- 취득가액 승계과세(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 과세)

○ 상속·증여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법

- 취득가액 상향과세

□ 자본이득 간주실현과세(Transfer-as-realisation)는 상속·증여 시점에 피상속인(증여자)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된 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 상속 시 미실현이익에 과세함으로써 사망 시까지 자산을 보유하거나 미실현이익의 실현을 연기할 동기를 제거함

○ 납세자의 유동성 부족 문제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상속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음

□ 취득가액 승계과세(Carry-over basis)는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수증자)이 승계하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양도 시 피상속인의 미실현이익도 함께 과세하는 것임

○ 피상속인이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까지 모두 과세되며, 납세자가 유동성이 있을 때 과세됨

○ 상속인(수증자)이 자산을 처분할 때 미실현이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자산을 양도하지 않는 한 미실현이익의 무기한 연기가 가능하며, 취득가액 입증을 위한 자료 기록이 중요함

□ 취득가액 상향과세(Step-up in basis)는 상속·증여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시점의 시장가치로 조정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음

○ 상속받은 재산에 이미 상속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미실현이익에 과세 시 이중과세라는 의견 및 상속세 부과 국가의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임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 시점까지 자산을 보유(lock-in effect)할 유인을 제공함

나.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 자산 과세 현황[67]

□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은 상속·증여로 증가한 부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함

○ 총 38개의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 증여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1개국임

○ 일부 국가(체코,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는 증여에 한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가까운 가족 간 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음

□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가는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며, 일부 국가는 상속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거나 자본이득에 비과세함

○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 중 호주,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은 취득가액 승계과세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양도 시 피상속인이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미실현이익까지 포함하여 과세함

○ 캐나다는 상속을 자산의 양도로 간주하여 상속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함

○ 라트비아는 상속 시점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피상속인이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과세하지 않음

□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주로 취득가액 상향과세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득가액 승계과세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속세를 과세하는 국가 중 12개국(칠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한국,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

---

67) OECD(2021)에서는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재산 자본이득 과세 현황은 상속재산에 한해 기술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도 자본이득 과세 현황은 상속재산에 한해 기술함. 또한, OECD 회원국 중 5개국(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 체코, 뉴질랜드)은 자본이득세제가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6개국(폴란드,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은 자료의 한계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시 취득가액을 상속 시점의 공정가치로 조정하여 피상속인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비과세함

○ 상속세를 과세하는 국가 중 총 8개국(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스위스)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미실현이익에도 모두 과세함

〈표 Ⅱ-3〉 상속·증여재산 미실현이익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구분	자본이득 실현과세 (Transfer-as-realisation)	취득가액 승계과세 (Carry-over basis)	취득가액 상향과세 (Step-up in basis)
정의	•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자본이득 비과세대상 자산은 제외)	• 자본이득 계산 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함 • 피상속인(증여자)이 자산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이익은 상속인(수증자)이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됨	• 자본이득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로 조정함 • 피상속인(증여자)이 자산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비과세됨
장점	• 자본이득에 모두 과세됨 • 사망 시점까지 자산을 보유하거나 미실현이익의 실현을 연기할 동기를 제거함	• 자본이득에 모두 과세됨 • 납세자가 유동성이 있을 때 과세됨	• 납세자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방지함
단점	• 유동성 부족 문제 •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상속세와 자본이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 조세부담이 높아짐	• 상속인(수증자)은 미실현이익의 과세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음 • 취득가액 기록이 중요함	• 조세회피 가능성 • 부정적인 재분배 효과 • 자산의 동결효과 문제

〈표 Ⅱ-3〉의 계속

구분		자본이득 실현과세 (Transfer-as-realisation)	취득가액 승계과세 (Carry-over basis)	취득가액 상향과세 (Step-up in basis)
운영국가[1]	상증세 과세 국가	덴마크, 헝가리	덴마크[2], 핀란드[3],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스위스	칠레, 덴마크[2], 핀란드[3], 프랑스, 헝가리[4], 한국,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
	상증세 비과세 국가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라트비아

주: 1) 상속재산의 양도 시 과세 현황을 나타내며, OECD 회원국 중 5개국(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 체코, 뉴질랜드)은 자본이득세제가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6개국(폴란드,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은 자료의 한계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2) 덴마크는 가업상속 주식에 한해 취득가액 승계기준을 적용하며, 보석·차량·미술품의 경우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함
3) 핀란드는 가업상속 주식에 한해 취득가액 승계기준을 적용하여 자본이득을 과세이연함
4) 헝가리는 무형자산에 한해 취득가액 상향과세를 적용함

자료: OECD, 2021, Table 3.12, Table 3.13을 참조하여 저자 수정

Ⅲ. 우리나라의 상속·증여 과세제도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우리나라는 자산의 상속·증여 시에 이전된 자산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자산의 유상 이전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됨

-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시점에 피상속인(증여자)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자산의 무상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

- 무상 이전으로 증가한 부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가. 상속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에게 귀속되던 모든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 이를 물려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함[68]

○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재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69]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형으로 운영되고 있음[70]

---

68) 국세청, 2024a, p. 33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70) 이창희, 2023, pp. 1214~1217

○ 상속세는 크게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으로 구분됨
- 유산세형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을 과세단위로 함
- 유산취득세형은 개별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유산 분배 후 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과세단위로 함

○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형의 상속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1) 납세의무자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임[71)]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함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짐

2) 상속세액의 산출구조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 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후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정됨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과세대상 국내외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함
-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표 Ⅲ-1〉 상속세 과세체계[1)]

구 분	비 고
총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5년 이내) -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일정 한도주[1)] 내에 아래의 공제를 적용함 ·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10%~50%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외국납부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물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주: 1. 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체계를 정리함
1)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차감)]

자료: 국세청, "세액계산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검색일자: 2025. 1. 7.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상속공제가 적용됨

○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기업·영농상속공제 등이 있음

○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용되며,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가업·영농상속공제는 재산의 성격에 기인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부여됨

□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음[72]

○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함

○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73]의 합계액 또는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일괄공제를 적용함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함[74]

○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인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민법」상 법정 상속지분인 일정비율까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를 유보하고 추후 잔존 배우자가 사망하는 때에 과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경감되는 것을 감안하여 30억원의 한도가 적용됨

- 한도금액인 30억원은 1997년 이후 변동이 없으나, 한도를 적용하는 산식이 일부 변경됨[75]

---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73) 자녀공제는 5천만원, 미성년공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연로자공제는 65세 이상자에 대해 5천만원,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에 기대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을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함[76]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됨[77]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적격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최고 6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함[78]

○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해 세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79]

- 따라서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사전·사후요건을 두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의 한도가 적용됨

-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은 연도별로 증가하여, 2004~2007년에는 최고 300억원, 2008~2022년은 최고 500억원, 2023년 이후로는 최고 600억원의 한도가 적용됨[80]

○ 사후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관련 이자상당액이 가산됨

---

75) 국세청, 2020, p. 166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77) 국세청, 2024a, p. 141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7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판결
80) 국세청, 2024a, p. 97

- 5년의 사후관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종사, 지분유지, 자산유지 및 고용유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함

3) 상속재산의 평가

□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됨[81)]

○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봄

○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

4) 세율

□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2000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율의 변동은 없으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됨

○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30%(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과세함

〈표 Ⅲ-2〉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나. 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증여세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무상으로 얻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82]

○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83]

○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와는 별도의 독자적 개념임

-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일 법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정의가 신설됨[84]
-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민법」상 증여인 재산의 무상 이전 이외에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분여,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이익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됨

1) 납세의무자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임[85]

○ 다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및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짐

---

82) 국세청, 2024a, p. 169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8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7010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3242&ancYd=20031230&ancNo=07010&efYd=2004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5. 2. 24.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2) 증여세액의 산출구조

□ 증여세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함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함[86]

□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인적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최고 6억원을 공제할 수 있음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아닌 친족 중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함[87]

〈표 Ⅲ-3〉 증여세 과세체계

구 분	비 고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여세 과세가액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의2조

〈표 Ⅲ-3〉의 계속

<table>
<tr><th>구 분</th><th>비 고</th></tr>
<tr><td>(-) 증여공제</td><td>-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table>
<tr><th>배우자</th><th>직계존속</th><th>직계비속</th><th>기타친족</th></tr>
<tr><td>6억원</td><td>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출산 1억원 추가)</td><td>5천만원</td><td>1천만원</td></tr>
</table>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td></tr>
<tr><td>(-) 감정평가수수료</td><td></td></tr>
<tr><td>(=) 증여세 과세표준</td><td></td></tr>
<tr><td>(×) 세율</td><td>- 10%~50%</td></tr>
<tr><td>(=) 증여세 산출세액</td><td></td></tr>
<tr><td>(+) 세대생략할증세액</td><td>-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td></tr>
<tr><td>(-) 세액공제</td><td>-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td></tr>
<tr><td>(+)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td><td></td></tr>
<tr><td>(-) 분납·연부연납</td><td>- 물납 불가</td></tr>
<tr><td>(=) 자진납부할 증여세액</td><td></td></tr>
</table>

주: 수증자가 거주자이며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를 정리함
자료: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검색일자 2025. 1. 7.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함

□ 거주자가 받은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아닌 5억원 또는 10억원을 공제하고 특례세율을 적용함

○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88]

8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5항

○ (창업자금 과세특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함[89]

○ (가업승계 과세특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함[90]

3) 증여재산의 평가

□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됨[91]

○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봄

○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

4) 세율

□ 증여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함

8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9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가. 양도소득세의 개요

□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양도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과세대상과 구분하여 분류과세됨

1) 양도의 개념

□ 양도란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92]

2) 과세대상 자산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하고 있음
  ○ 따라서 「소득세법」에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이 과세되며 개인이 보유하는 집기비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및 기타자산이 있음[93]
  ○ 무허가·미등기 건물 또한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됨
  ○ 주식 등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함

---

92)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93) 「소득세법」 제94조

○ 기타자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 있음

3) 세액계산구조

□ 양도소득금액은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계산됨[94]

○ 그룹1.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그룹2. 주식 등

○ 그룹3. 파생상품

○ 그룹4. 신탁수익권

□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함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고 80%에 상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95]

-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형성된 양도소득에 대한 물가상승분 공제 및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투기 억제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부동산 등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96]

○ 기본공제는 총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연간 250만원이 공제됨[97]

- 국내 부동산 등, 국외 부동산 등, 주식(국내·외 통산) 등, 파생상품(국내·외 통산), 국외전출세, 신탁수익권별로 연도별 각 250만원을 공제함

---

94)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95) 「소득세법」 제95조
96) 국세청, 2024b, p. 192
97) 「소득세법」 제103조; 동법 제118의7조.; 동법 제118의10조 제4항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함[98]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을 말함
- 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함

〈표 Ⅲ-4〉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구 분	비 고
양도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가능함
(-) 필요경비	- 설비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금액 ·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3% 해당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 제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30% -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최고 80%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국내 부동산, 국외 부동산, 주식(국내·외 통산), 파생상품(국내·외 통산), 국외전출세, 신탁수익권 각각 250만원 -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 양도소득과세표준	

98)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동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및 제3항

〈표 Ⅲ-4〉의 계속

구 분	비 고
(×) 세율	- 부동산·기타자산 등: 6~45%(비사업용토지 16~55%) - 주식: 10%, 20%, 25%, 30% - 파생상품 : 20%(탄력세율 10%) - 미등기양도자산 : 7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자료: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검색일자 2025. 1. 7.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공제되며, 미공제잔액은 이월공제되지 않음[99)]

○ 1순위: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2순위: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공제함

4) 세율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인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산에 대해서는 50%(2년 미만은 40%)[100)]의 세율이 적용됨

- 그 외,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을 적용함

99)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10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해서는 각각 2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표 Ⅲ-5〉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 초과분의 45%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주식 등에 대해서는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주식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국내주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됨

○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중소기업 외의 1년 미만 제외)에 대해서는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단일세율이 적용됨

〈표 Ⅲ-6〉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

구분			대주주	대주주 외
국내주식	중소기업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누진세율(20%, 25%)	10%
	중소기업 외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국외주식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신탁수익권에 대해서는 20%,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101]

○ 파생상품 등의 양도세율은 원칙적으로 20%이지만,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1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3호, 제1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 신탁수익권은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함

나.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별도 규정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증여 시점에는 피상속인의 미실현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상향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무상 이전 시점의 시가에 의함[102]

○ 피상속인(증여자)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103]

○ 상속·증여 시점에 해당 자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상속재산공제 등으로 인해 상속·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를 무상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 예외적으로 배우자 등 이월과세, 우회양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함

○ 배우자 등 이월과세 및 우회양도는 증여 후 양도거래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 (배우자 등 이월과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104]
- (우회양도)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

1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103) 신상화·송은주·이성현, 2019, p. 26
104) 「소득세법」 제97의2조 제1항

여한 후 그 증여를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105]

○ 반면,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며, 이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모두 과세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됨[106]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에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음[107]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108]

○ 다만,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증여한 배우자 등 및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함

□ 상속받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에 의하며, 배우자 등 이월과세 대상 수증자산은 증여자의 취득일에 의함[109]

○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속방식에 의함

- 반면 일반적인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수증자의 취득일에 의함

---

105)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106) 「소득세법」 제97의2조 제4항
107) 서면-2021-법규재산-6738, 2022. 12. 5.
108)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109)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3. 상속·증여세 과세 현황

□ 2023년 기준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증여세는 1.8%인 것으로 나타남

○ 상속세는 2014~2019년까지는 전체 세수 중 약 1% 수준이었으나 2021년 세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

○ 증여세는 2020년에 세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감소하여 과거와 비슷한 수준임

〈표 Ⅲ-7〉 한국의 상속·증여 세수액 비중(2014~2023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세수	191,678	204,727	229,182	251,204	279,106	278,540	273,110	329,325	376,934	329,972
상속세	1,696	1,944	1,995	2,342	2,832	3,154	3,904	6,945	7,611	8,544
비중	0.9%	0.9%	0.9%	0.9%	1.0%	1.1%	1.4%	2.1%	2.0%	2.6%
증여세	2,929	3,100	3,355	4,443	4,527	5,175	6,471	8,061	6,983	6,090
비중	1.5%	1.5%	1.5%	1.8%	1.6%	1.9%	2.4%	2.4%	1.9%	1.8%

주: 세수액은 현년도분 기준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5. 1. 8. 참조하여 저자 작성

□ 2023년 기준 피상속인 수는 292,545명이며 이 중 과세대상자는 19,944명으로 6.82%이고 총 상속재산가액 85조원의 67.73%인 58조원에 대해 12조원의 상속세가 과세됨

○ 과세비율은 총 상속재산가액 규모가 클수록 높음

- 총 상속재산가액 1억원 이하, 1억 초과 3억원 이하는 각각 0.04%, 0.84%의 피상속인만이 과세됨
- 반면, 5억 초과 10억원 이하는 피상속인의 28.69%, 10억 초과 20억원 이하는 76.08%, 20억원 초과 구간은 모두 95% 이상이 과세됨

○ 이는 비과세 및 과세불산입 상속재산, 상속재산공제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표 Ⅲ-8〉 총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상속세 결정 현황(2023년)

(단위: 명, 백만원)

총상속재산가액	과세			과세미달		합계	
	피상속인 수	총상속재산가액	총 결정세액	피상속인 수	총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 수	총상속재산가액
1억 이하	84	5,241	91	205,146	2,443,215	205,230	2,448,455
3억 이하	312	63,043	1,209	36,935	6,681,705	37,247	6,744,748
5억 이하	239	95,243	2,932	15,265	5,964,404	15,504	6,059,647
10억 이하	5,026	3,747,101	110,177	12,490	8,752,997	17,516	12,500,098
20억 이하	8,305	11,688,366	612,206	2,611	3,212,432	10,916	14,900,798
30억 이하	2,761	6,723,031	675,378	118	282,081	2,879	7,005,112
50억 이하	1,928	7,297,588	1,052,511	26	97,428	1,954	7,395,016
100억 이하	850	5,813,454	1,173,508	6	41,450	856	5,854,904
500억 이하	402	7,146,365	2,064,695	4	58,858	406	7,205,222
500억 초과	37	15,324,640	6,587,034	0	0	37	15,324,640
경정	0	169,126	10,401	0	132,846	0	301,972
합계	19,944	58,073,198	12,290,143	272,601	27,667,415	292,545	85,740,614

주: 총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6-2-3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5. 1. 8.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최근 10년간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 비중은 2014~2020년 중에는 전반적으로 3% 미만이었으나 2021년 이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6.82%를 차지함

○ 전체 총 상속재산가액은 대상기간 중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과세되는 부분은 약 4배 정도 증가함

○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의 상승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음

- 2021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9.9%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해당 기간 수도권은 12.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110]

110) 지표누리 e-나라지표, “주택매매가격 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40, 검색일자: 2025. 2. 3.

- 국세청은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자료 설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및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111]

〈표 Ⅲ-9〉 상속세 결정 현황(2014~2023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과세				과세미달				합계	
	피상속인		총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		총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	총상속재산가액
		%		%		%		%		
14년	7,542	2.64	13,407,488	46.49	278,181	97.36	15,432,578	53.51	285,723	28,840,066
15년	6,592	2.03	12,306,485	30.27	317,757	97.97	28,342,709	69.73	324,349	40,649,194
16년	7,393	2.60	15,264,016	42.01	276,484	97.40	21,070,827	57.99	283,877	36,334,843
17년	6,986	3.04	16,483,205	46.12	222,840	96.96	19,258,023	53.88	229,826	35,741,228
18년	8,002	2.25	18,278,452	39.20	348,107	97.75	28,344,841	60.80	356,109	46,623,293
19년	8,357	2.42	19,755,409	50.83	336,933	97.58	19,112,651	49.17	345,290	38,868,060
20년	10,181	2.90	24,981,063	50.51	341,467	97.10	24,471,998	49.49	351,648	49,453,062
21년	12,749	3.70	30,618,767	54.46	331,435	96.30	25,605,567	45.54	344,184	56,224,334
22년	15,760	4.53	67,793,080	70.82	332,397	95.47	27,927,870	29.18	348,157	95,720,951
23년	19,944	6.82	58,073,198	67.73	272,601	93.18	27,667,415	32.27	292,545	85,740,614

주: 총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임

자료: 신상화·송은주·이성현, 2019, p. 29, 〈표Ⅱ-9〉를 국세통계연보, 「6-2-3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연도별 자료 참조하여 저자가 업데이트함

□ 증여세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전체 증여건수 중 34~46%가 과세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77조원의 증여재산가액 중 57조원에 대해 과세되었음

○ 상속세와 비교하여 볼 때 공제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 기인하여 전체 증여건수 중 과세대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

111)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국세통계로 풀어보는 생활 속의 세금 이야기」, 2023. 6. 29.

〈표 Ⅲ-10〉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23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과세				과세미달				합계	
	건수		증여재산가액 등		건수		증여재산가액 등		건수	증여재산 가액 등
		%		%		%		%		
14년	105,533	46.53	29,423,168	79.17	121,278	53.47	7,741,134	20.83	226,811	37,164,302
15년	101,136	37.86	29,746,717	76.20	166,000	62.14	9,288,731	23.80	267,136	39,035,448
16년	124,876	44.14	29,790,144	74.93	158,013	55.86	9,969,275	25.07	282,889	39,759,419
17년	146,337	44.85	42,495,431	77.68	179,979	55.15	12,212,960	22.32	326,316	54,708,391
18년	160,421	42.57	49,820,146	75.56	216,402	57.43	16,116,373	24.44	376,823	65,936,519
19년	169,911	42.45	54,003,211	72.88	230,388	57.55	20,091,474	27.12	400,299	74,094,685
20년	183,499	39.74	53,382,133	69.64	278,301	60.26	23,275,349	30.36	461,800	76,657,482
21년	275,592	34.44	85,056,345	72.40	524,517	65.56	32,430,614	27.60	800,109	117,486,960
22년	252,412	35.46	67,657,620	73.25	459,463	64.54	24,713,143	26.75	711,875	92,370,763
23년	208,508	39.34	57,359,994	73.57	321,496	60.66	20,607,418	26.43	530,004	77,967,412

자료: 신상화·송은주·이성현, 2019, p. 30. 〈표 Ⅱ-10〉을 국세통계연보, 「6-4-3과세유형별 증여세 결정 현황」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가 업데이트함

□ 2023년 기준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자산유형별 비중을 보면 건물, 유가증권, 토지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체 상속재산가액 51조원 중 건물이 38%, 유가증권이 29%, 토지가 16%의 비중을 차지함

- 전체 상속재산가액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비중이 최소 83%임[112)]

□ 상속재산의 자산 종류별 비중은 총 상속재산가액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 총 상속재산가액 5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부동산이 57~79%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총 상속재산가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이 88%의 비중을 차지함

112) 유가증권 중 소액주주 지분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나 유가증권은 총 상속재산가액 500억원 이하의 집단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금융자산은 총 상속재산가액 중 12%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총 상속재산가액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8%의 비중을 가짐

□ 2023년 기준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자산유형별 구성은 건물, 금융자산, 토지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체 증여재산가액 중 건물이 32%, 금융자산이 25%, 토지가 19%의 비중임

- 상속세의 경우와는 달리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증여재산가액 규모가 작을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유가증권 비중이 높음

○ 다만, 증여세는 증여건수별로 증여재산가액 규모가 산정되는바, 특정 자산수준 계층의 증여재산 구성내역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움

〈표 Ⅲ-11〉 총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자산 종류 비중(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총상속 재산가액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상속재산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억 이하	356	18	777	39	200	10	571	28	103	5	2,007	100
3억 이하	9,813	31	13,620	43	986	3	5,805	19	1,095	3	31,318	100
5억 이하	15,923	25	32,218	51	1,101	2	10,830	17	3,478	5	63,550	100
10억 이하	620,389	19	1,846,613	58	34,247	1	522,577	16	178,226	6	3,202,052	100
20억 이하	2,102,322	20	6,055,112	59	184,123	2	1,472,845	14	525,995	5	10,340,397	100
30억 이하	1,236,650	21	3,196,173	55	154,597	3	844,284	14	404,349	7	5,836,052	100
50억 이하	1,260,075	20	3,455,067	55	279,159	4	879,432	14	462,285	7	6,336,018	100
100억 이하	1,200,977	24	2,345,037	47	350,150	7	733,825	15	379,758	8	5,009,748	100
500억 이하	1,428,298	23	2,304,538	38	1,093,782	18	867,939	14	440,611	7	6,135,167	100
500억 초과	364,130	2	542,161	4	12,864,689	88	590,258	4	275,926	2	14,637,163	100
경정	35,881	27	54,179	41	-15,125	-11	25,280	19	32,397	24	132,611	100
합계	8,274,815	16	19,845,496	38	14,947,907	29	5,953,644	12	2,704,222	5	51,726,082	100

주: 자산 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6-2-4. 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 현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5. 1. 8.을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표 Ⅲ-12〉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자산 종류 비중(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증여재산가액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증여재산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천만원 이하	27,619	27	5,019	5	6,666	6	51,957	50	12,590	12	103,851	100
5천만원 이하	273,589	30	107,136	12	97,383	11	382,156	41	64,307	7	924,572	100
1억 이하	899,544	27	804,819	24	257,741	8	1,223,810	37	146,996	4	3,332,911	100
3억 이하	1,839,574	24	2,530,749	33	683,063	9	2,222,874	29	429,744	6	7,706,005	100
5억 이하	951,404	20	1,717,244	37	424,110	9	1,251,547	27	299,730	6	4,644,035	100
10억 이하	1,548,570	20	3,165,202	41	923,239	12	1,515,581	20	515,704	7	7,668,296	100
20억 이하	632,774	17	1,547,447	40	605,414	16	692,846	18	346,508	9	3,824,988	100
30억 이하	184,852	14	420,842	31	312,659	23	280,402	21	142,996	11	1,341,751	100
50억 이하	118,897	11	334,975	32	255,050	24	184,158	18	157,446	15	1,050,527	100
50억 초과	216,468	5	443,450	10	2,210,715	51	819,516	19	644,884	15	4,335,033	100
경정	3,728	1	41,426	16	119,281	46	32,385	13	61,528	24	258,348	100
합계	6,697,019	19	11,118,309	32	5,895,322	17	8,657,232	25	2,822,433	8	35,190,316	100

자료: 국세통계연보, 「6-4-4. 증여재산종류별 결정 현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5. 1. 8.을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Ⅳ. 상속·증여세 비운영 국가의 상속·증여 과세제도

1. 캐나다

가. 배경[113]

□ 캐나다 연방정부는 1972년부터 상속·증여세를 폐지함

○ 1935년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납세자들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에게 자산이전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세를 도입함[114]

○ 캐나다 주정부는 세수확보 목적으로 1892~1903년에 걸쳐 상속세를 도입하였으며,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을 위한 세수 증대 목적으로 연방 상속세를 도입함

□ 연방정부의 상속세 폐지는 1972년부터 시행된 자본이득 과세제도 도입이 큰 영향을 미침

○ 캐나다는 1972년부터 자본이득세를 도입함에 따라 사망 또는 증여로 재산이 양도될 때 자본이득세와 상속세가 모두 과세되면서 세부담이 커짐

□ 주정부별로 상이한 상속세 과세제도에 따른 조세 복잡성 증대 및 낮은 세수입도 연방정부의 상속세 폐지에 기여함

○ 대부분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상속세 도입 이후 자체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연방정부와 상속세 지급약정(rental payment)을 맺어 조세 행정이 단

113) Duff, 2005, pp. 85~107
114) Mockler et al., 1964, pp. 1~2

순화되었으나 일부 주정부는 자체적인 상속세 과세로 복잡하고 중복된 과세체계가 유지됨

- 대부분의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상속세 부과를 하지 않는 대신 연방정부로부터 각 주에서 징수된 연방 상속세의 50%만큼 보조금을 받는 약정을 체결함
- 브리티시콜롬비아, 온타리오, 퀘벡 주는 연방정부의 상속세 도입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상속세를 징수하였으며,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방 상속세의 50%를 한도로 주정부 상속세의 공제를 허용함

○ 196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상속세 조정비율은 기존 50%에서 75%로 인상되어 연방정부의 상속세 과세 의지를 약화시킴

- 즉,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서 징수된 상속세수 중 75%를 주정부에 지급하거나 주정부 상속세를 연방정부 상속세의 75%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함

○ 196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소·중규모의 재산을 가진 납세자의 세부담이 커져 여러 반발을 불러왔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속세 과세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폐지를 결정함

- 1968년 연방 상속·증여세율을 누진세율로 개정하고, 500만캐나다달러 미만인 재산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
-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소·중규모 재산을 가진 납세자의 세부담이 발생하여 상당한 정치적 반대를 불러왔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가족 농장 소유주의 반대가 컸음
- 농업이 강세를 보이던 알버타, 사스카츄완 정부는 연방 상속세를 환급함

○ 상속세 폐지 이전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를 넘은 적이 없음

□ 일부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상속세 폐지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1973년부터 1985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폐지함

○ 주정부 간 과세제도 차이로 조세회피 가능성, 낮은 세수, 자본이득 과세로 세수입 발생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함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인 및 수증자는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가 면제됨

○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을 갖는 소득만 과세소득으로 보며[115], 상속·증여는 소득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116]

- 상속·증여로 이전된 재산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속·증여 시 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117]

□ 캐나다는 상속 또는 증여를 자산의 처분으로 간주하여 상속·증여 시점에 상속·증여 받은 자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함

○ 상속 시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공정가치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함[118]

○ 증여 시 증여자가 공정가치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함[119]

1) 자본이득 과세제도

가) 과세대상

□ 캐나다는 자본자산(capital property)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에 대해 자본이득으로 과세함[120]

○ 자본자산은 감가상각자산 및 자산 매각 시 자본이득(손실)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이나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산을 말함[121]

---

115) 캐나다 소득세법 ITA 3(a)
116) 이준봉, 2013, p. 62
117) Peter W et al., 2010, pp. 95~96; 이준봉, 2013, p. 63 재인용
118) ITA 70(5)
119) ITA 69(1)(b)
120) 캐나다 국세청(CRA), 2023a, p. 9
121) 캐나다 국세청(CRA), 2023a, p. 6

- 사업목적의 재고자산은 자본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 자본이득 신고서인 'Schedule 3 – 자본이득 또는 손실'에서는 자본자산의 유형을 부동산, 주식(지분), 기타 금융상품(부채, 약속어음, 암호자산 등), 개인용 자산 등 8개 항목으로 나누고 있음[122][123]

○ 자산의 처분이란 자산의 처분으로 수익금을 받는 거래, 신탁과의 재산 이전거래, 주식·채권·어음 등과 같은 금융상품의 상환(redeem)거래를 말함[124]

- 금융상품의 상환거래는 부채의 상환, 합병으로 인한 주식교환거래, 자산을 취득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옵션의 만기 거래 등을 포함함

□ 일부 거래의 경우 실제 자산의 처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산의 처분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을 과세함[125]

○ 처분으로 간주하는 거래는 사망, 증여, 캐나다 거주자의 다른 국가로의 이민, 신탁에 재산 이전, 자산의 교환 및 용도변경, 자산의 수용·도난·손상, 특정 금융거래가 있음

- 특정 금융거래는 자산의 구입 또는 매매가 가능한 옵션의 만기, 부채의 취소 또는 청산, 주식의 변환거래가 있음
- 실제로 자본거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거래의 발생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아 자본이득(손실)으로 과세하는 것임

---

122) 캐나다 국세청(CRA), 2023b

123) 자본이득 신고서 중 하나인 'Schedule 3'에서는 자산 유형을 ① 적격 소규모사업주식, ② 적격 농·어업 자산, ③ 압류 부동산(Mortage foreclosures & conditional sales repossessions), ④ 주식 및 지분(상장주식, 뮤츄얼펀드 지분, 적격 소규모기업 주식 및 기타 주식), ⑤ 부동산·감가상각자산 및 기타자산, ⑥ 기타 금융자산(부채, 약속어음, 암호자산 및 기타 유사한 자산), ⑦ 개인용 자산, ⑧ 열거된 개인용 자산(Listed Personal Property; LPP)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음

124) Wolters Kluwer, 2024a, Chapter 5070

125) 캐나다 국세청(CRA), 2023a, p. 9

나) 과세체계

□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Adjusted cost base)와 필요경비(Expense of sale)를 차감하여 산정함[126]

○ 양도가액은 자산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로 자산의 수용·도난·손상으로 받는 보상금(compensation)도 포함함[127]

○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과 취득 당시 필요경비를 합산한 금액임

○ 필요경비는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리비용, 중개인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법률비용, 양도세, 광고비 등이 포함됨

□ 자본이득 및 손실은 50%만 과세소득에 포함함

○ 1972년부터 자본이득의 전면 과세 시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자본이득 및 손실의 50%만 과세함[128]

- 1987년부터 자본이득의 과세대상 소득 포함률은 점차 인상되어 1990년에서 2000년까지는 75%였으나 2000년 50%까지 단계적 인하 후 현재까지 유지됨

○ 2026년 1월 1일부터 25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이득 및 손실은 66.67%를 과세소득에 포함함[129]

- 노동소득보다 자본이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130]

126) 캐나다 국세청(CRA), 2023a, pp. 10~11
127) Wolters Kluwer, 2024a, Chapter 5075
128) CANADIAN TAX FOUNDATION, https://www.ctf.ca/EN/EN/Newsletters/Perspectives/2021/3/210304.aspx, 검색일자: 2025. 2. 14.
129)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5/01/government-of-canada-announces-deferral-in-implementation-of-change-to-capital-gains-inclusion-rate.html, 검색일자: 2025. 2. 12.
130)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24, pp. 334~336

□ 자본이득은 개인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세율은 15~33%의 5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됨

○ 주정부의 소득세율은 주별로 상이하며 15~25.8%의 세율이 부과됨[131]

- 주정부 소득세율이 제일 높은 주는 퀘벡 주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25.8%, 뉴파운드랜드 주는 21.8%, 노바스코티아 주는 21%,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는 20.5%임

○ 연방정부와 주정부 소득세율 합산 시 최고세율 기준 44.5~54.87%의 소득세율로 과세됨

〈표 IV-1〉 캐나다의 개인소득세율(2024년 기준)

(단위: 캐나다달러)

과세표준	세율
0 ~ 55,867	15%
55,868 ~ 111,733	20.5%
111,734 ~ 173,205	26%
173,206 ~ 246,752	29%
246,752 초과	33%

자료: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frequently-asked-questions-individuals/canadian-income-tax-rates-individuals-current-previous-years.html. 검색일자: 2025. 1. 13.

□ 자본손실의 경우 당해연도 자본이득과 상계가 가능하며, 미공제된 자본손실은 3년간 소급 적용 또는 무기한 이월공제가 가능하나 개인용 자산의 경우 제한된 손실공제 규정을 적용함

○ 개인용 자산[132]은 손실이월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규정된 개인자산(Listed personal property; LPP)[133]에 한해 3년간 소급 적용 또는 7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131) IBFD, *Canada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2024

132) 개인용 자산은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자산으로 가구, 자동차, 보트 등이 있음

133) 규정된 개인 자산(LPP)은 개인용 자산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을 말하며 예로 미술품, 보석, 우표, 희귀한 원고·책이 있음(자료: CRA(2023a), p. 7)

다) 특례규정

□ 캐나다는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 비과세, 자본이득 공제, 자본이득 과세이연의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134]

○ 자본이득 비과세

-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단체에 특정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 주거주지 처분 시 거주기간에 따라 자본이득 비과세

○ 자본이득 공제 적용

-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적격 농업·어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자본이득 과세이연

- 배우자 간 자산 양도하는 경우
- 농·어업의 가업 상속하는 경우
- 특정 비상장주식 및 채권을 기부하는 경우
- 자본이득을 소규모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 자산처분 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135]

□ (**자본이득 비과세**) 거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비과세하며, 일부 기간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자본이득에 비과세함[136][137]

○ 비과세 금액은 자본이득에 '(1 + 부동산 취득 이후 실제로 거주한 과세기간(연간 기준))/부동산 취득 이후 과세기간(연간 기준))'로 계산한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함

---

134) 상속·증여 시에도 해당하는 특례규정은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인 '2)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 과세제도'에서 기술함

135) 자산을 양도하고 판매가액을 분할해서 받는 경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자본이득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것임. 자본이득에서 아직 수령하지 못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다음연도 과세대상 자본이득에 포함함. 최대 4년간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공제 신청금액은 전년도 공제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자료: ITA 40(1.1); 캐나다 국세청(CRA), 2023a, p. 12)

136) Wolters Kluwer, 2024a, Chapter 5033

137) Wolters Kluwer, 2024a, Chapter 5260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자산 플리핑(Property flipping)으로 보아 자본이득 면세를 허용하지 않고,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138]
- 예외규정을 두어 사망, 결혼·이혼·출산·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납세자와 관련된 사람의 가구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질병, 이직 등의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65일 미만 거주하고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 (**자본이득 공제**[139]) 적격 소기업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shares)과 적격 농업자산 및 어업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자본이득 공제(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를 허용함

○ 적격 소기업 주식은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140]의 주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141]
- ① 본인, 배우자, 본인과 관련된 조합(partnership)이 보유한 주식이어야 하며, 주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임
- ② 주식 처분 시점에 자산의 90% 이상을 캐나다에서 수행하는 정상적 사업활동(active business)에 사용함
- ③ 주식 처분 이전 2년간 법인의 자산 대부분(50% 이상)을 캐나다에서 수행하는 정상적 사업활동에 사용한 기업의 주식이어야 함

○ 적격 농·어업자산은 적격 사용인이 2년 이상 소유하고, 농·어업의 사업목적으로 활용한 자산이어야 함[142]
- 농·어업 자산에는 주식, 조합의 지분, 부동산(토지, 건물), 어선, 농·어업 관련

138) 캐나다 국세청(CRA), 2023a, p. 43
139) IBFD, *Canada-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7. Capital gains*, 2024
140) 캐나다 지배 비상장법인은 비거주자 또는 상장회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정된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지 않은 법인을 말함(자료: 캐나다 국세청(CRA), 2023a, p. 5)
141) Wolters Kluwer, 2024a, Chapter 5022
142) Wolters Kluwer, 2024a, Chapter 5021

무형자산(우유 및 계란 생산권리(quota), 어업권) 등을 포함함[143]
- 적격 사용인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분을 가진 농·어업 조합임
- 농·어업의 사업목적으로 자산을 활용하였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농·어업 활동의 매출액(gross revenue)이 경영인의 기타 다른 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을 초과해야 함

□ 자본이득 공제는 평생 발생하는 자본이득에서 125만캐나다달러[144]를 한도로 공제가 허용됨[145]

○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한도를 기존 1,016,836캐나다달러에서 125만캐나다달러로 인상하였으며[146],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한도가 적용될 예정임[147]
- 공제한도는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됨

○ 예외규정을 두어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자본이득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148]
- 정상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active business corporation)의 주식을 자녀, 손자, 조카(niece/nephew), 조카의 자녀(grandniece/grandnephew), 의붓자녀가 통제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자본이득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자본이득 과세이연**) 배우자에게 자산 이전 시 배우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자본이득의 과세이연을 허용하며 양수인은 양도자의 취득원가로 자산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149]

---

143) 캐나다 국세청(CRA), 2023a, p. 8
144) 2025년 1월 8일 기준 한화로 환산한 금액은 약 12억 6천만원임
145) Wolters Kluwer, 2024a, Chapter 5008
146) 캐나다 재무부, 2024, pp. 334~336
147)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5/01/government-of-canada-announces-deferral-in-implementation-of-change-to-capital-gains-inclusion-rate.html, 검색일자: 2025. 2. 12.
148) IBFD, *Canad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1.7. Capital gains, 2024.

○ 단,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자본이득 신고도 가능하며, 자본이득은 양도일 기준 공정가치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소규모기업의 주식(Shares of small business)을 처분하고 발생한 자본이득으로 적격 소규모 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한 금액만큼 자본이득의 과세이연을 허용함[150]

○ 처분 대상 소규모 기업 주식은 ①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으로 ② 자산의 대부분(90% 이상)을 캐나다에서 주로 수행하는 사업활동에 사용하며, ③ 기업의 총자산 장부가액은 5천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④ 주식 보유기간 동안 소규모 기업인 기업의 주식이어야 함

○ 새로운 소규모기업에 투자하고 취득한 주식은 185일 이상 보유해야 하며,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소규모기업은 총자산의 90% 이상을 캐나다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에 사용해야 함

○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한도는 주식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투자한 기업당 5천만캐나다달러[151]임

2)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별도 규정

□ 캐나다는 상속·증여거래는 자산의 처분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상속·증여 당시 시가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며, 상속인(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당시 시가로 함[152]

□ 일부 상속·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이득 비과세, 자본이득 과세이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됨

---

149) IBFD, *Canad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1.7.4.2, Capital gains, 2024.

150) 캐나다 국세청(CRA), 2023a, pp. 26~27

151) 2025년 1월 10일 기준 한화로 환산한 금액은 약 506억원임

152) Wolters Kluwer, 2024a, Chapter 2575

□ 피상속인의 대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까지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치 증가분을 포함한 총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153]

가) 자본이득 비과세

□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권을 적격단체(Qualified donee)에 기부 목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음[154]

○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권은 다음과 같음

- 지정된 거래소(Designated stock exchange)[155]에서 거래되는 주식·채권·권리
- 뮤츄얼펀드의 주식·지분
- 캐나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채권
- 분리형 펀드 신탁(Segregated fund trust)의 지분
- 연계 채권(Linked Note)이 아닌 특정한 채무증권
- 토지 사용권(covenant, easement)이 포함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토지(재단(private foundation)에 기부한 경우 제외)

○ 적격단체는 캐나다의 등록된 자선단체 등으로 다음과 같음

- 등록된 자선단체
- 등록된 캐나다 아마추어 운동 협회
- 등록된 국가 예술 서비스 기관
- 캐나다에 거주하며 노인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등록된 주택공사

---

153) 캐나다 국세청(CRA), “Prepare tax returns for someone who died,”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life-events/doing-taxes-someone-died/prepare-returns/what-to-file.html#h-2, 검색일자: 2025. 2. 13.

154) Wolters Kluwer, 2024a, Chapter 5033

155) 캐나다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국내·외 거래소로 캐나다의 Toronto Stock Exchange, Montreal Exchange 및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증권거래소, 한국의 한국거래소(코스피, 코스닥) 등의 거래소가 지정되어 있음(자료: 캐나다 재무부,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services/designated-stock-exchanges.html, 검색일자: 2025. 2. 11.)

- 캐나다의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 캐나다에서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유엔 및 그 기관
- 외국 대학: 일반적으로 캐나다 학생이 포함되며, 캐나다 국세청(CRA)에 등록되어 있음
- 캐나다 연방정부, 주정부, 준주정부(Territories)
- 캐나다 정부가 기부한 등록된 외국 자선단체
- 등록된 언론기관

○ 상속받은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부해야 함

□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권 외 자본자산을 적격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자본이득은 과세되나 기부자의 세액공제가 허용됨[156]

○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의 첫 200캐나다달러까지는 15%이며, 2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29%임
- 최고세율 33%가 적용되는 납세자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은 33%의 공제율을 적용함

○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기부금액은 기부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자본자산 증여로 과세된 자본이득의 25%를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 대부분의 경우 자본자산 기부로 부과된 자본이득세는 기부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액과 상쇄된다는 의견이 있음

156) IBFD, *Canad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1.8.3.4.1, 2024.

나) 자본이득 과세이연

□ 캐나다 내의 농·어업용 자산을 세대 간 이전 시 최대 9년간 과세이연이 가능함[157]

○ 농·어업 자산은 주식, 지분, 토지,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포함하며, 자산을 자녀(손자, 증손자 포함)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함

- 자본이득 과세이연을 위해서는 양수인이 캐나다 거주자이며, 양도인과 양도인의 배우자·부모·자녀 중 최소 1명 이상이 농·어업 활동에 정기적, 지속적으로 참여했어야 함

□ 비적격증권(Non-qualifying security)을 적격단체(Qualified donee)에 기부 시 최대 5년간 과세이연이 허용됨[158]

○ 비적격증권은 기부 이후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파트너십의 증권으로 다음의 증권들이 포함되며, 지정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제외됨[159]

- 기부 이후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주식
- 본인 또는 기부 이후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자 또는 파트너십의 채무증권(obligation)
- 본인 또는 기부 이후에 특수관계가 있는 자 또는 파트너십이 발행한 증권

○ 자본이득 과세이연이 허용되나 기부자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음[160]

○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비적격증권 기부 주식가액에 대해 자본이득을 과세함[161]

---

157) 캐나다 소득세법(ITA) 40(1.1); 캐나다 국세청(CRA), 2023a, p. 12
158) 캐나다 국세청(CRA), 2023a, p. 12
159) 캐나다 국세청(CRA), 2023a, p. 7
160) 비적격증권 요건을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자본이득에 과세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허용함
161) 캐나다 국세청(CRA), 2023a, p. 12

〈표 IV-2〉 캐나다의 주요 자산 유형별 자본이득 과세 현황

거래 유형	대상자산	자본이득 과세 여부	요건
상속·증여	현금	자본이득 비과세[1]	-
	상장주식	자본이득 과세	-
	비상장주식	자본이득 과세	-
	비상장주식 (요건 충족 시)	한도 내 자본이득 공제 자본이득 과세이연 (최대 9년)	•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 (CCPC) 주식 2년 이상 보유 • 캐나다에서 주로 사업 수행[2]
	농·어업자산 (요건 충족 시)	한도 내 자본이득 공제	• 직계가족이 2년 이상 소유 • 처분 이전 2년 동안 총 농어업 매출액이 농어업 외 소득을 초과
		자본이득 과세이연 (최대 9년)	• 직계비속에게 이전하는 경우 • 양수인은 캐나다 거주자며, 양도인 및 양도인의 직계존·비속이농·어업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함
	부동산	자본이득 과세	-
	거주 부동산	자본이득 비과세	거주기간 고려하여 자본이득 비과세함
	배우자 간 상속·증여	자본이득 과세이연	-
	개인용 자산 (미술품, 보석 등)	자본이득 과세	-
적격 단체에 기부[3]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권(상장주식, 정부채권 등) 기부 시	자본이득 비과세	-
	그 이외 증권 기부 시	자본이득 과세 기부자 세액공제	-
	특수관계가 있는 적격단체에 증권 기부 시	자본이득 과세이연 (최대 5년)	-
	부동산 기부 시	자본이득 과세 기부자 세액공제	-

주: 1) 자본이득은 자본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현금은 자본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2) 캐나다에서 주로 사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상속·증여 시점에 90% 이상 자산을 캐나다 내 사업에 사용했고, 주식처분 이전 최소 2년간 50% 이상 자산을 캐나다 사업에 사용했는지로 판단함
3) 캐나다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자본이득 과세특례가 적용됨

자료: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자본이득 과세제도

□ 캐나다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양도 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며, 취득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 시점의 공정가치로 함

○ 상속·증여 시 당시 시가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당시 시가로 함

○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자산 또는 농·어업 가업상속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을 과세함[162)]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 캐나다 연방정부가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기 이전 5년(1967~1971년)간 상속·증여세수는 전체 세수의 0.9~1.1%의 비중을 차지함

○ 캐나다의 연방정부는 1972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함

○ 주정부는 1973년부터 1985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폐지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속·증여세수는 상속·증여세의 폐지 이후 감소하였으나 총세수의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음

○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작아 총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고, 자본이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소득세수가 증가하여 총세수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972년부터 연방정부는 이전에 과세하지 않던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과세를 시행함
- 캐나다는 상속·증여자산의 미실현 자본이득을 간주실현방식에 의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총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임

---

162) ITA 74.2(1); BDO, *Farm transition: Is your farm offside?*, https://www.bdo.ca/insights/farm-transition-is-your-farm-offside, 검색일자: 2025. 2. 10.

○ 상속·증여세의 폐지와 총세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총세수의 증가는 주로 소득세 및 소비세의 증가에 기인함

〈표 Ⅳ-3〉 캐나다의 세목별 세수 현황(1967~1977년)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

	총세수[1)]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상속·증여세		사회보장 기여금	재산세	소비세	기타
				금액	비중				
1967	19.763	5.105	2.408	0.217	1.1%	1.728	2.274	7.41	0.621
1968	22.352	6.093	2.863	0.24	1.1%	2.015	2.548	7.933	0.66
1969	26.422	7.724	3.69	0.246	0.9%	2.465	2.848	8.697	0.752
1970	28.182	9.144	3.18	0.282	1.0%	2.721	3.073	8.927	0.855
1971	30.776	10.192	3.173	0.273	0.9%	2.902	3.304	10.045	0.887
1972	35.164	12.005	3.89	0.214	0.6%	3.180	3.568	11.377	0.93
1973	41.012	13.463	4.91	0.201	0.5%	3.685	3.769	13.946	1.038
1974	52.028	17.095	6.717	0.174	0.3%	4.725	4.213	18.062	1.042
1975	57.631	18.896	7.832	0.156	0.3%	5.787	4.855	18.45	1.655
1976	64.829	22.008	7.551	0.161	0.2%	7.172	5.765	20.642	1.53
1977	69.391	22.656	7.926	0.125	0.2%	7.791	6.563	22.665	1.665

주: 1) 캐나다 전체정부(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세수데이터임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Details of tax revenue of Canada』

2. 호주

가. 배경

□ 호주는 19세기 초에 상속세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나 1984년에 폐지함[163)]

163) 호주 연방재무부,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economic-roundup-winter-2006/a-brief-history-of-australias-tax-system, 검색일자: 2025. 1. 15.; Pedrick, 1981, pp. 114~116

○ 19세기 초에 뉴사우스웨일 주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1901년에는 모든 지방정부에서 상속세를 운영함
  - 유산세 방식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제금액을 두어 소규모 유산에 끼치는 영향을 제한함
○ 1914년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상속세를 도입함
  -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됨
○ 1977년 퀸즈랜드 주정부에서의 폐지를 시작으로 1979년 연방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1984년에는 모든 주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함
  - 퀸즈랜드 주정부는 1975년 배우자 이전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1977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전면 폐지함
  - 퀸즈랜드 주의 폐지 이후 지방정부 간 조세경쟁으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의 확산으로 인해 1984년 모든 지방정부에서 상속세가 폐지됨

□ 호주의 상속세 폐지 배경으로는 소규모유산에 대한 과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통합 실패, 농장 소유주의 반발 및 조세회피의 용이성이 언급됨[164)]
○ 공제금액에 인플레이션이 고려되지 않아 소규모유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함
  - 1977-78년 연방정부는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해서는 4만호주달러를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1만 2천호주달러를 공제하였으며 지방정부는 1만 2천호주달러 수준임[165)]
  - 이에 따라 1977-78년 유산의 약 12%가 연방정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으며 지방정부는 2배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164) Pedrick, 1981, pp. 119~125; Duff, 2005, pp. 108~112; Lin et al., 2018, pp. 6~9; Smith, 2004, pp. 85~88

165) 참고로, 1972-73년도 기준으로는 연방정부의 공제한도는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해서는 2만호주달러,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1만호주달러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유산의 55% 이상이 4만호주달러 미만이고 약 83%가 8만호주달러에 미달하였으며, 지방정부의 공제한도는 이보다 낮아 더 많은 유산이 과세대상이었음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부과로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상당하였음
- 특히 소규모유산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이 과중하여 과세권의 통합이 권고되었으나 실행되지 않음

○ 상속세가 농장자산에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줌에 따라 농장 소유주의 반발이 거세졌음
- 농장 소유주들은 농지는 상속세 평가가액인 시가 대비 수익률이 낮아 상속세 납부를 위한 비자발적 매각이 초래된다고 주장함
-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자료는 부족하지만, 농장 소유주의 주장은 상속세 폐지에 큰 영향을 끼침

○ 세제의 결함으로 각종 조세전략을 통한 조세회피가 용이하여 상속세제에 대한 비판이 만연하였음
- 재량신탁을 이용한 비과세, 사망 직전 18개월 이내의 증여만 합산되는 등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조세회피가 용이하였음
- 이에 따라 세제를 잘 모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 조세부담이 가중되며 '자발적 세금'이라는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함

□ 그 외 세수 중요도의 감소, 과세대상 유산의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도 영향을 끼침[166]

○ 1973년 기준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의 비중은 연방세는 0.7%, 지방정부는 9% 수준을 차지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 1973년 상속세는 역대 최저 비중을 차지함
- 1971년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급여세가 이관되면서 상속세가 지방정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

○ 소규모유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되면서 세수 대비 행정비용이 증가함
- 유산규모 하위 55.7%에 해당하는 소규모유산의 상속세 세수비중은 3.9%에 불과하여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음

166) Duff, 2005, pp.109~110; Lin et al., 2018, pp. 8~9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중복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따라 행정비용의 부담이 가중됨

□ 이러한 배경에서 1970년부터 상속세 폐지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됨[167]

○ 시드니 네거스(Sydeny Negus)는 상속세가 과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발하여 과부에 대한 상속세 폐지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됨

○ 이후 제출한 상속세 폐지법안이 입안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 큰 영향을 끼침

□ 이후의 정부 검토보고서는 상속세제는 존치하되 개혁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1977년 선거기간 자유당의 상속세 폐지공약이 1978년 법률로 이행되면서 연방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가 폐지됨[168]

○ 1973년 연방상원위원회는 상속세를 지방정부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함

○ 1974년과 1975년 Asprey 보고서[169]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전체적인 조세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존치를 강력히 지지함

- 연방정부에서 상속세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되 세수를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조세회피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과세대상자가 더욱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현대화할 것을 권고함

○ 1977년 선거기간 동안 재임 중인 자유당 총리(Malcolm Fraser)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연방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폐지를 발표하고 재당선되는 경우에는 연방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전격 폐지할 것으로 밝힘

○ 1977년 12월 자유-국민 연합정부가 선거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1979년부터 연방 상속세 및 증여세가 폐지됨

---

167) Pedrick, 1981, p. 114; Duff, 2005, p. 107

168) Pedrick, 1981, p. 118; Duff, 2005, pp. 111~112

169) 호주 재무장관의 위임에 따라 Kenneth Asprey를 좌장으로 한 세제검토위원회(Taxation Review Committee)가 공정성, 효율성, 단순성을 중심으로 호주의 조세체계 개혁을 위해 검토한 보고서임(https://treasury.gov.au/speech/a-tax-system-for-australia-in-the-global-economy, 검색일자: 2025. 1. 16.)

- 한편, 야당인 노동당은 자본에 대한 대체 형태의 세금이 도입될 때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를 유예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따라 1985년 자본이득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상속·증여와 같은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170]

○ 호주는 1985년에 자본이득세제를 도입함[171]

- 1985년 이전 호주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일반세금이 없었음
- 자본이득세 도입 이전 대부분의 자본이득은 소득세 기반에서 제외되었음

○ 1978년 연방정부의 상속세 폐지 이후에도 일부 지방정부는 상속세를 존치하였으나 1984년 모든 지방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함

○ 호주는 부유세(Annual wealth tax)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

□ 한편, 2009년 Henry 보고서는 상속세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합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함[172]

○ 보고서는 상속세는 비교적 효율적인 세금이지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대규모 유산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할 것을 권고함

○ 향후 노령층의 자산보유 비중 증가가 예상되는바 상속세는 지속가능한 세원으로 적절할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상속세의 도입을 권고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힘

---

170) Pedrick, 1981, pp. 116~117

171) 호주 연방재무부,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economic-roundup-winter-2006/a-brief-history-of-australias-tax-system, 검색일자: 2025. 1. 15.

172) 호주 연방재무부, 2009, p. 137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173]

□ 상속인 및 수증자는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면제됨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매각을 통한 이익창출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통상소득 정의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면제됨[174]

○ 개인적 노력과 무관한 증여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됨[175]

- 순수한 증여에 대해서는 금액 및 자산 유형(현금,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다만, 외국신탁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176]

□ 피상속인 및 증여자 입장에서는 상속·증여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과세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상속과 증여 모두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지만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함

□ 호주는 원칙적으로 자산을 상속받은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추후 해당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상속으로 발생한 처분은 조세목적상 무시됨[177]

-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자산이 이전되는 것은 소득세법상 자본이득세 사건에 해당하지만 예외규정을 두어 과세를 이연함

---

173) 신탁, 퇴직연금 등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개인 거주자의 상속·증여에 따른 승계 시 과세문제를 기술함. 또한, 호주는 자본이득세를 1985년에 도입함에 따라 제도 시행 전인 1985년 9월 20일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면제되며 해당 자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자본이득세 시행 이후 취득한 자산에 한정하여 기술함

174) Wolters Kluwer, 2024b, p. 426

175) Wolters Kluwer, 2024b, pp. 368~369; 호주 국세청, https://community.ato.gov.au/s/article/a079s0000009GnFAAU/tax-on-gifts-and-inheritances, 검색일자: 2025. 1. 13.

176)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trusts/in-detail/distributions/receiving-payments-or-assets-from-foreign-trusts, 검색일자: 2025. 1. 13.

177)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이하 "ITAA 97") s.128-10

○ 다만, 면세단체[178], 특정 퇴직연금펀드(complying superannuation entity)의 수탁자, 비거주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 시점에 소득세가 과세됨[179]
- 사망일 현재 시가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을 인식하여 피상속인의 최종 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함
- 예외적으로 수혜자가 기부금 소득세 공제대상이고 만일 상속 외의 방식에 의한 자산 이전이었다면 소득에서 공제되었을 기부인 경우에는 해당 유증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을 무시함
- 비거주자의 경우 호주에서 과세되지 않는 자산이 상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 시점에 과세됨[180]

□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 시점의 시가에 의하여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자본이득을 계산하고, 수증자는 증여 시점의 시가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181]

○ 증여는 조세목적상 일반적인 처분과 동일하게 적용됨[182]
- 주된 주택양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됨

□ 호주가 상속재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과세이연한 근거는 불분명하나, 자본이득세와 상속세의 거리두기를 염두에 둔 정책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183]

○ 1985년 호주 세제개혁보고서는 자본이득세의 이연을 제한하기 위해서 증여 또는

178) 교회, 자선단체 등이 이에 해당됨

179) ITAA 97 s.104.215.; EY, 2024a, p. 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forms-and-instructions/capital-gains-tax-guide-2021/whats-new/deceased-estates/capital-gain-or-capital-loss-on-death-is-disregarded, 검색일자: 2025. 1. 13.;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apital-gains-tax/inherited-assets-and-capital-gains-tax/how-cgt-applies-to-inherited-assets, 검색일자: 2025. 1. 14.

180) 과세대상 호주 재산은 일반적으로 호주 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말함(자료: MLC TechConnetct, *Taxation issues for estates,* 2023, p. 5)

181) ITAA 97 s.112-20.;

182) 호주 국세청, https://community.ato.gov.au/s/article/a079s0000009GnFAAU/tax-on-gifts-and-inheritances, 검색일자: 2025. 1. 13.

183) Sutton and Parket, 2022, p. 459; Raspin et al., 2021, pp. 306~307

상속에 의한 처분에 대해 간주실현제도의 도입을 제안함[184]

○ 정부는 상속세와 상속에 대한 간주 자본이득세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나 만연한 상속세에 대한 대중적 혐오감을 고려하여 상속자산의 자본이득세를 과세이연한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이 있음

- 간주 자본이득세를 통해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산 전체 가액에 대해 과세하지만 사망 시점의 간주 자본이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른 점을 강조함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1)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과세제도

□ 호주는 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 종합합산 과세함

○ 호주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함

- 국세청에서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 세목을 구성하지는 않음

□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처분(disposal) 등 '자본이득세 사건(CGT event)'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됨[185]

○ 자산의 처분이란 어떤 행위나 사건 또는 법의 운영 등으로 인해 자산의 소유권이 납세자로부터 다른 실체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매각, 증여, 트레이딩 또는 교환, 자산의 손실·도난·파손(비자발적 처분) 등이 포함됨[186]

184) Tilley, 2021, p. 14
185) ITAA 97 s.100.20
186) ITAA 97 s.104.10; Wolters Kluwer, 2024b, pp. 472~473

□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은 재산 및 재산이 아닌 법적 또는 이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음[187]

○ 「소득세법」은 이에 대한 예시로 토지 및 건물, 주식, 옵션, 외화, 영업권, 5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수집품(예, 보석, 예술작품 등), 1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사용 자산(예. 보트, 가구, 전자제품 등) 등을 열거함

□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CGT 할인'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188]

○ 필요경비에서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 및 취득기간 중 부담한 기타비용이 포함됨[189]

- 취득을 위한 법률비용·감정평가비용, 자산개량비용 등이 포함됨

○ 호주 거주자인 개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50%에 대해서 과세함[190]

- 자산동결효과를 완화하여 자산관리의 활성화, 개인의 투자 참여 촉진 및 국가자본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1999년 'CGT 할인'제도를 도입함[191]

□ (주된 거주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의 주 거주 주택과 2헥타르 이내의 부수토지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비과세함[192]

---

187) ITAA 97 s.108.5; s.100.25

18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apital-gains-tax/calculating-your-cgt, 검색일자: 2025. 1. 16.

189) 호주 국세청, "Calculating your CGT,"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apital-gains-tax/calculating-your-cgt/cost-base-of-asset, 검색일자: 2025. 1. 17.

190) ITAA 97 Subdivision 115-A; ITAA 97 s.115.100

191) 호주 재무부,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peter-costello-1996/media-releases/new-business-tax-system, 검색일자: 2025. 1. 16.

192) ITAA 97 Subdivision 118-B.; 호주 국세청, "Moving to a new main residence,"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apital-gains-tax/property-and-capital-gains-tax/your-main-residence-home/eligibility-for-main-residence-exemption, 검색일자: 2025. 1. 17.

○ 소유기간 동안 주된 거주지로 사용된 주택으로서 과세소득 창출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주택 및 2헥타르 이내의 부수토지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주택 소유기간 중 일부만 주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및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부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

- 총 소유기간 중 주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금액을 산정함

□ (소규모사업체에 대한 특례) 소규모사업체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5년 비과세, 과세이연 등의 혜택이 제공됨[193]

○ 소규모사업체 특례는 총 매출액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의 활성사업자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함[194]

○ (15년 비과세) 소규모사업체를 최소 15년 이상 운영한 납세자로서 건강 악화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은퇴로 인해(55세 이상일 것) 사업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자본이득을 비과세함[195]

○ (50% 감면) 사업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50%를 감면함[196]

○ (은퇴 비과세) 은퇴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평생 한도 50만호주달러 내의 금액을 비과세함[197]

- 사업자가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이득을 퇴직연금 등에 납부해야 함

○ (대체자산 취득 과세이연) 사업자산을 매각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자산 취득에 사용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이연함[198]

---

193) Wolters Kluwer, 2024b, pp. 255~270

194) 호주 국세청, “CGT concessions eligibility overview,”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deductions-and-concessions/incentives-and-concessions/small-business-cgt-concessions/small-business-cgt-concessions-eligibility-conditions/cgt-concessions-eligibility-overview, 검색일자: 2025. 1. 17.

195) ITAA 97 Subdivision 152-B

196) ITAA 97 Subdivision 152-C

197) ITAA 97 Subdivision 152-D

198) ITAA 97 Subdivision 152-E

□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에서만 공제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자본손실액은 무기한 이월하여 차기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될 수 있음[199]

○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을 통산함

- 수집품, 개인사용 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유형의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과 통산하지 않음[200]

○ 자본손실은 다른 유형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음[201]

□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0~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에 추가하여 2%의 의료부담비가 부과됨

〈표 IV-4〉 호주의 소득세율(2024-25 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율
0~18,200호주달러	0%
18,201~45,000호주달러	18,201호주달러 초과분의 16%
45,001~135,000호주달러	4,288호주달러 + 45,000호주달러 초과분의 30%
135,001~190,000호주달러	31,288호주달러 + 135,000호주달러 초과분의 37%
190,001호주달러 이상	51,638호주달러 + 190,000호주달러 초과분의 45%

자료: 호주 국세청, "Tax rates – Australian resident," https://www.ato.gov.au/tax-rates-and-codes/tax-rates-australian-residents, 검색일자: 2025. 1. 17.

□ 당해연도에 자본소득이 발생한 자는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함[202]

○ 호주의 소득세 과세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임

---

199) ITAA 97 s.102.10

200) 호주 국세청,"Using capital losses to reduce capital gains,"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apital-gains-tax/calculating-your-cgt/using-capital-losses-to-reduce-capital-gains, 검색일자: 2025. 1. 17.

201) ITAA 97 s.102-10(2)

202)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s.161. ; IBFD, *Australi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11. Administration – 1.11.1. Tax returns* (Last Reviewed: 10 December 2024)

2)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별도 규정

□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함[203]

○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봄

○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주된 거주주택이 과세소득 창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일의 시가에 승계한 것으로 봄

- 일반적으로 주된 거주주택의 자본이득은 비과세되어 필요경비 입증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협력비용 경감 차원에서 1996년 8월 20일 이후 승계되는 주택부터 시가에 승계하도록 함[204]

○ 재고자산은 사망일 현재 시가로 보아 피상속인의 최종 소득세 신고 시 처분이익을 계산함[205]

□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CGT 할인 적용 시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함[206]

□ 피상속인의 주된 거주주택을 승계받아 상속인의 주된 거주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주된 거주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총 소유기간 및 주택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207]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된 거주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주된 거주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된 거주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208]

---

203) ITAA 97 s.128.15.; Wolters Kluwer, 2024b, pp. 604~605

204) Raspin et al., 2020, p. 497

205) ITAA 97 s.70.105

206) ITAA 97 s.115.30

207) 호주 국세청, “Inherited main residence,” https://www.ato.gov.au/forms-and-instructions/capital-gains-tax-guide-2021/whats-new/real-estate-and-main-residence/inherited-main-residence#ato-Partialexemption, 검색일자: 2025. 1. 23.

○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주된 거주주택으로서 당시 소득 창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을 대상으로 함[209]

○ 과세관청의 재량에 의하여 처분기한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음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규모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210]

○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자산을 처분하였다면 소규모사업체에 대한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을 자산에 한하여 적용함

- 은퇴 감면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55세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피상속인이 대체자산 취득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과세이연된 부분은 영구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 국세청장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기한(2년)이 연장될 수 있음

□ 자본손실은 무기한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피상속인의 미사용 자본손실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211]

□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자산 취득에 대한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음[212]

○ 다만, 상속인이 자선단체와 같은 조세상 혜택이 주어지는 단체, 외국거주자인 경

---

208) ITAA 97 s.118.195

209) 주된 거주주택 여부를 사망 직전으로 판단하고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임대 등에 공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는 점에 대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의견이 있음(Raspin et al., 2021, p. 306)

21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forms-and-instructions/capital-gains-tax-concessions-for-small-business-guide-2015/death-and-small-business-cgt-concessions, 검색일자: 2025. 1. 17.

211)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investments-and-assets/capital-gains-tax/inherited-assets-and-capital-gains-tax/how-cgt-applies-to-inherited-assets, 검색일자: 2025. 1. 10. ; ATO TD 95/47

212) https://community.ato.gov.au/s/article/a079s0000009GnFAAU/tax-on-gifts-and-inheritances, 검색일자: 2025. 1. 13.

우와 비거주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함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 연방정부가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기 직전 5년(1974~1978년) 동안 호주의 상속·증여세수는 총세수의 1~1.5%의 비중을 차지함

○ 1977-78년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연방정부 상속세의 공제한도 인상 및 1977년부터의 주정부 상속·증여세 폐지는 연방정부의 상속·증여세 폐지 이전 상속·증여 총세수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 1972-73년 대비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한도가 2배 인상됨
- 주정부는 1977년부터 1984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폐지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속·증여세 폐지 이후에도 총세수는 매년 증가함

○ 상속·증여세수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폐지 이전 약 1%로 총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상속·증여세의 폐지와 총세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총세수의 증가는 주로 소득세 및 소비세의 증가에 기인함

〈표 Ⅳ-5〉 호주의 세목별 세수 현황(1974~1984년)

(단위: 십억호주달러, %)

	총세수[1]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상속·증여세		급여세	소비세	기타
				금액	비중			
1974	17.531	7.709	2.447	0.278	1.6%	1.040	4.852	1.205
1975	21.120	9.213	2.618	0.314	1.5%	1.226	6.194	1.555
1976	24.551	11.047	2.921	0.339	1.4%	1.385	7.047	1.812
1977	26.671	12.118	3.218	0.343	1.3%	1.488	7.559	1.945
1978	29.088	12.791	3.157	0.289	1.0%	1.582	9.114	2.155

〈표 Ⅳ-5〉의 계속

	총세수[1)]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상속·증여세		급여세	소비세	기타
				금액	비중			
1979	33.807	15.033	3.539	0.220	0.7%	1.758	10.757	2.500
1980	39.878	17.532	4.851	0.175	0.4%	1.988	12.402	2.930
1981	46.332	21.205	5.252	0.138	0.3%	2.467	14.038	3.232
1982	50.802	22.943	5.132	0.071	0.1%	2.724	16.326	3.606
1983	55.711	24.671	4.979	0.044	0.1%	2.815	18.834	4.368
1984	65.103	29.256	6.079	0.014	0.0%	3.110	21.603	5.041

주: 1)호주 전체 정부(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세수데이터임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Details of tax revenue of Australia."

3. 스웨덴

가. 배경

1) 폐지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제 주요 변경 내용

□ 스웨덴은 1885년 상속세제를 도입하였으며 1914년 상속세제에 대한 보완을 위해 증여세제를 도입함

○ 1885년에 유산형 방식의 상속세를 도입하였으며 1894년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함

○ 1914년에 증여세를 도입함

□ 1900년대 초에는 상속세율이 높지 않았으나 1934년 이후 상속세율이 인상되기 시작하여 1982년에는 최고 7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었음[213)]

213) Gunnarsson and Eriksson, 2017, pp. 8~9

○ 상속세제를 재분배, 형평 및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함
○ 스웨덴의 상속세율은 다른 유럽국가 및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었음

□ 스웨덴은 1991년 가을에 상속세 및 증여세제를 개혁하여 법정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세율 구간을 단순화함[214]
○ 1991년 개혁 직전에는 최고세율이 최고 65%이었으며 최고 6단계 누진세율 체계였음
- 그룹 1(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율은 총 6개의 구간으로 구분된 누진세율 체계로 10~60%의 세율이 적용되었음
- 그룹 2(그 외 상속인)에 대한 세율은 총 6개 구간으로 구분되었으며 15~65%의 세율이 적용됨
- 그룹 3(그 외)에 대한 세율은 3개 구간으로 10~30%의 세율이 적용됨
○ 1991년 개혁을 통해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고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세율체계를 단순화함
- 그룹 1, 2, 3 모두에게 10~30%의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함
○ 정부는 1991년 세제개혁은 세계화, 경제통합 및 자본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밝힘
-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금융시장이 비교적 폐쇄적이었으나 1985년 은행의 대출상환규제 해지, 1989년 외환규제의 완화 등 금융시장이 개방됨
- 스웨덴은 1991년 7월 1일 EC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함
- 세계경제의 통합 및 금융시장 개방시대에 경제회복을 위해 세부담을 인하하는 방식으로의 전반적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봄

□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2004년 1월 1일부로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함
○ 폐지 이전 배우자의 기본공제금액은 28만크로나[215]이었으며 최고 30%의 누진세

214) Gunnarsson and Eriksson, 2017, pp. 10~16
215) 2024. 12. 24. 기준 약 3,689만원

율이 적용되었음

○ Escobar(2017)은 2003년 기준 배우자의 약 37%가 상속세를 부담하였으며 유산당 약 15,000크로나[216]의 배우자 상속세가 납부된 것으로 추산함[217]

○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배경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해 생존 배우자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점이 언급됨[218]

- 1996~2001년 동안 주택가격은 평균 54% 상승되었으며 스톡홀름 지역은 99%까지 상승함

□ 폐지 직전 스웨덴의 상속세제는 유산취득세 및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음

○ 상속세는 상속인이 승계한 순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됨[219]

- 다만, 소규모 사업은 원활한 승계를 위해 시가의 30%만을 과세하며 부동산은 시가의 75% 수준, 비상장주식은 30%를 과세하는 등 예외규정이 있음

○ 피상속인과의 친밀도에 따라 상속인을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누진세율(10~30%)로 과세함[220]

- 기본공제(배우자는 28만크로나, 그 외 그룹 1은 7만크로나, 그룹 2와 그룹 3은 2만 1천크로나)[221] 적용 이후 누진세율(10%, 20%, 30%)로 과세함

□ 폐지 직전에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었음[222]

○ 매년 1만크로나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적용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었음

---

216) 2024. 12. 24. 기준 약 197만원
217) Escobar, 2017, p. 5
218) Ydstedt and Wollstad, 2015, p. 13; Gunnarsson and Eriksson, 2017, pp. 18~20
219) Escobar, 2017, p. 5; Elinder et al., 2014, p.6.; Ydstedt and Wollstad, 2015, p. 6
220) Elinder et al., 2014, p. 7
221) 참고로 그룹별 기본공제금액은 1987년에도 동일한 금액이었음(자료: Gunnarsson and Eriksson, 2017, p. 10)
222) Elinder et al., 2014, p. 7

〈표 Ⅳ-6〉 스웨덴의 상속·증여세제 변천 과정

연도	주요 내용
1885년	유산세형 상속세제 도입
1894년	유산취득세형으로 상속세제 개편 상속인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최고세율을 차등 적용함 - 배우자 등 그룹 1에 대해서는 최고 1.5%의 세율이 적용됨
1914년	증여세제 도입
1948년	유산형 상속세제 추가 도입
1959년	유산형 상속세제를 폐지하고 총 세부담이 동일하도록 유산취득세형 상속세제를 강화
1987년	배우자 등 그룹1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60%로 인하 (1982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70%였음)
1992년	최고세율을 30%로 인하 - 모든 그룹에 대해 10%, 20%, 30%의 세율을 적용함 - 그룹별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금액은 상이함(예. 10%의 세율은 그룹 1에 대해서는 30만크로나 이하에 대해, 그룹 2는 7만크로나 이하에 대해 적용됨)
2004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제 폐지
2005년	상속세 및 증여세제 전면 폐지

자료: Ydstedt and Wollstad, 2015, p. 5; Eriksson and Gunnarsson, 2017, pp. 8~1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폐지

□ 스웨덴은 2004년 12월 17일부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였음[223]

○ 2004년 12월 사회민주내각에 의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함

- 1990년대 상속세 폐지를 위한 몇 차례의 정치적 시도가 있었음
- 2004년 9월 20일 정부는 상속세제 폐지를 포함한 예산을 발표함
- 2004년 12월 16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법안(2005년 1월 1일 시행)이 의회에서 통과됨

223) Klitgaard and Paster, 2021, p. 100; Erixson, 2017, pp. 1289~1290

- 2004년 12월 26일 동남아시아 쓰나미 재해를 고려해 2004년 12월 17일부로 소급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함

□ 스웨덴 정부는 높은 세무행정비용 대비 낮은 세수 비중을 폐지 사유로 언급함[224]
  ○ 1975~2005년의 기간 동안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대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225]
  ○ 반면, 보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사업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된 요인으로 강조함

□ 그 외 상속세의 정당성 감소, 상속세의 폐지가 경제성장을 위한 유인책으로 보일 수 있는 점, 정치적 비용이 거의 없는 점 등을 폐지 원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226]
  ○ 상속세제의 복잡한 감면규정 및 조세전략 등으로 인해 가장 부유한 계층의 세금 부담은 감소된 반면 중산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세의 정당성이 퇴색함
  ○ 상속세의 낮은 세수 중요도를 감안하면 상속세의 폐지는 재정적 부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이 될 수 있음
  ○ 상속세제가 더 이상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가업 이전과 관련하여 유산분배를 복잡하게 만드는 점 등으로 인해 세제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됨[227]
    - 스웨덴의 상속세제는 기본공제금액이 낮으며, 인플레이션 및 중위소득의 증가,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함
    - 20세기 후반 스웨덴 국민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상속세의 영향을 받음[228]
    - 스웨덴 경제단체는 현재 경영자의 상당수가 50대로 약 14만개 기업의 세대교체가 예상되지만, 상속세는 특히 소규모기업의 세대교체를 어렵게 하여 경제에

224) Klitgaard and Paster, 2021, p. 100; Elinder et al., 2014, p. 9
225) Klitgaard and Paster, 2021, p. 96
226) 현진권, 2010, pp. 13~16; Klitgaard and Paster, 2021, pp. 100~101; Elinder et al., 2014, p. 9
227) Erixson, 2017, p. 1289; Elinder et al., 2014, p. 9
228) Ydstedt and Wollstad, 2015, p. 9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주장함[229)]

○ 2004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속세제의 폐지와 관련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의 70%가 지지 또는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4%만이 세수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함

- 2004년 Hammar, et al.(2006)이 스웨덴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폭 감액 또는 폐지를 선호하는 비중이 조사 대상 11개 세목 중 가장 높게 답변됨

□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전면 폐지는 예상치 못한 개혁이었다는 평가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전면 폐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갑자기 폐지되었다는 견해가 있음[230)]

- 재산세위원회(The Property Tax Committee)는 2004년 6월 최종보고서에서 상속세의 폐지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존 규정의 몇 가지 개정을 제안함[231)]
- 상속세의 폐지는 재산세위원회가 예산안 제출 전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현대적인 개정안을 제출할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급진적 결정이라는 견해가 있음[232)]
- 정치권의 협상에 의해 당시 개혁이 논의되었던 부유세와 상속세 중 상속세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233)234)235)]

---

229) Eriksson and Gunnarsson, 2017, pp. 23~24

230) Erixson, 2017, p. 1289

231) 재산세위원회는 상속세율의 인하,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개정, 폐쇄기업으로 운영되는 가족기업 주식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상속세의 면제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상속세제의 개정을 위한 정부 검토가 진행되어 왔음 (Elinder et al., 2014, p. 9; Eriksson and Gunnarsson, 2017, pp. 20~22)

232) Silfverberg, 2005(Erixson, 2017, p. 1289 재인용)

233) Lodin, 2009(Erixson, 2017, p. 1289 재인용)

234) 상속세와 부유세의 폐지는 스웨덴 기업연합의 최우선 희망사항이었음(Ydstedt and Wollstad, 2015, p. 11)

235) 부유세는 2007년에 폐지됨(EY, 2024a, p. 420)

○ 입법위원회는 상속세 폐지가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비판의견을 제시함[236]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인 및 수증자의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237]

○ 스웨덴 「소득세법」은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스웨덴은 자산을 상속·증여하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추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산소득으로 과세함[238]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1) 자본이득세 과세제도 개요

□ 스웨덴은 활동소득과 자산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239]

○ 스웨덴은 1990-91년 조세개혁을 통해 이원적 소득세 과세제도를 도입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활동소득으로 보아 최고 약 52.37%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활동소득에 대해서는 국세(0%, 20%)와 지방세(2024년 평균 약 32.37%)가 부과됨

---

236) Erixson, 2017, p. 1290

237) 스웨덴 소득세법(Inkomstskattelag) Chapter 8 section 2.

238) IBFD, *Sweden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1.7. Capital gains*(Last Reviewed: 15 October 2024)

239) IBFD, *Sweden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1.1. Introduction -1.1.3. Type of tax system*(Last Reviewed: 15 October 2024)

○ 자본이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임대소득 등 자산 및 부채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은 자산소득으로 구분되어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240]
-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음

□ 스웨덴은 자본이득 과세대상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고 있음
○ 「소득세법」은 자산의 처분이익을 자본이득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자본이득 과세대상인 자산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소득세법」은 특정 자산 유형(예. 부동산, 주식)의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특별조항을 두고 있으며 그 외 열거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기타자산으로 보고 있음
- 부동산, 주식, 외화자산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
- 가상자산은 별도로 열거되지 않았으나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과세됨

□ 자본이득 과세대상인 자산의 처분이란 매매, 교환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이전을 말함[241]
○ 특정 사건이 자산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법률 해석의 대상인 것으로 보임[242]

가) 부동산 자본이득[243]

□ 자본이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됨[244]
○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및 인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같은 취득부대비용 및 자산개량비용이 포함됨

---

240) 스웨덴 소득세법 Chapter 41 section 1
241) 스웨덴 소득세법 Chapter 44 section 3
242) SVERIGES RIKSDAG(스웨덴 의회), "Skatteverkets nya rättsliga vägledning,"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ar-pa-skriftlig-fraga/skatteverkets-nya-rattsliga-vagledning_h412988/, 검색일자: 2025. 2. 12.
243) IBFD, *Sweden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7. Capital gains - 1.7.1. Immovable property*(including gains on dwellings) (Last Reviewed: 15 October 2024)
244) 스웨덴 소득세법 Chapter 44 section 13-14

- 자산개량비용이란 연 단위로 5천크로나를 초과하여 지출한 신축·확장·개조·수리 및 유지관리 비용을 말함. 개조·수리와 관련된 비용은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비용에 한함[245]

□ 개인 주거용 부동산은 자본이득의 22/30를, 사업용 부동산은 자본이득의 90%를 과세대상으로 함

○ 따라서 개인 주거용 부동산 자본이득의 유효세율은 22%이고 사업용 부동산 자본이득의 유효세율은 27%임

○ 개인 주거용 부동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은 50%를 공제할 수 있으며 사업용 부동산의 자본손실은 63%를 공제할 수 있음[246]

○ 미개발 토지는 일반적으로 매매 당시 납세자 본인 또는 가까운 친척을 위한 주택을 지을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 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됨[247]

□ 주된 거주 주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248]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택 자본이득에 대해 종전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의 처분일까지 자본이득세가 이연될 수 있음[249]

- (주된 주택 요건) 납세자가 처분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된 거주지로 점유하였거나 처분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최소 3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한 경우
- (금액 요건) 자본이득이 5만크로나를 초과할 것

---

245) 스웨덴 국세청, https://www.skatteverket.se/servicelankar/otherlanguages/inenglishengelska/individualsandemployees/declaringtaxesforindividuals/howtofileyourtaxreturn/thecontentsoftheincometaxreturn/saleofrealproperty.4.7be5268414bea064694c7a6.html, 검색일자: 2024. 12. 26.

246) IBFD, *Sweden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1.9. Losses - 1.9.2. Capital losses*(Last Reviewed: 15 October 2024)

247) 스웨덴 국세청,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drivaforetag/foretagsformer/enskildnaringsverksamhet/naringsfastigheter/forsaljningavnaringsfastigheter.4.569165a01749e7ae78911c.html, 검색일자: 2024. 12. 26.

248) 스웨덴 소득세법 Chapter 47

249) 신규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대체주택 취득요건) 새로운 주된 거주용 주택을 종전 주택의 처분일의 익년 이내에 취득할 것

○ 이연금액은 300만크로나를 한도로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에 의해 결정됨
- 대체주택의 취득가액이 종전 주택의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이득 전액(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과세이연받을 수 있음
- 그 외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취득에 소요된 비율에 따라 과세이연 금액이 감소됨

○ 2021년 이후로 과세이연에 대한 가산금은 폐지됨
- 이전에는 이연된 금액에 대해 연 1.67%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자로 간주하여 자본소득세를 과세하였음

나) 주식 자본이득[250]

□ 주식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자본이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됨

○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 카테고리 내의 모든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에 의해 계산됨[251]

○ 상장주식 및 이와 유사한 증권(옵션 제외)의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20%로 대체될 수 있음[252]

□ 주식의 자본이득은 상장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 및 자본손실 공제를 달리함

○ 상장주식의 자본이득은 전액 과세되는 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의 6분의 5를 과세함[253]
- 따라서 비상장주식 자본이득의 유효세율은 25%임

---

250) IBFD, *Sweden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1.7. Capital gains - 1.7.2. Shares*(Last Reviewed: 15 October 2024)

251) 스웨덴 소득세법 Chapter 48, section 7

252) 스웨덴 소득세법 Chapter 48, section 15

253) 스웨덴 소득세법 Chapter 42, section 15

○ 이득과 상쇄되지 않은 자본손실의 70%는 납세자의 다른 자산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음[254]

□ 폐쇄회사(Closely-held Company)의 적격 주주의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255]

○ 폐쇄회사의 능동적 주주가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을 낮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도입됨

- 스웨덴 정부는 세제의 균일성(uniformity)과 중립성을 위해서 상장회사의 주주 근로자와 동등하게 과세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제도를 도입함[256]

○ 폐쇄회사란 최대 4명의 주주가 유한책임회사(또는 economic association)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회사 사업활동이 서로 독립적인 다른 사업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개인이 통제하는 경우를 말함

○ 자본이득 등이 한도금액(gränsbelopp)[257] 이내인 경우에는 자본이득의 3분의 2는 자산소득으로 과세하고 3분의 1은 비과세함[258]

- 소규모 사업체의 여건을 개선하고 직접 사업의 매력도를 향상(기업가 정신의 제고)할 목적으로 2006년부터 자본이득의 3분의 1를 비과세하도록 개정함
- 다만, 해당 개정 이후 지주회사, 쉘 컴퍼니(shell corporation), 저수익기업을 설립하여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됨

---

254) IBFD, *Sweden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1.9. Losses - 1.9.2. Capital losses*(Last Reviewed: 15 October 2024)

255) Bloomberg Tax, *Portfolio 7370-1st: Business Operations in Sweden, X. Taxation of Individuals — Residents, C. Determination of Gross Income/Earned Income, 3. Capital Income, c. Holdings in a Closely-held Company,*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drivaforetag/foretagsformer/famansforetag/forsaljningavkvalificeradeaktierkonkurserlikvidation.4.b1014b415f3321c0de2820.html, 검색일자: 2024. 12. 27.; Niklas Wykman, "Capital taxation of owners of closely held corporations in Sweden, 1991 to 2018," a Örebr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2019, pp. 4~5

256) Wykman, 2019, p. 6

257) 한도금액은 회사가 지급한 임금과 회사의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됨

258) Gunnarsson and Eriksson, 2017, pp. 26~27

○ 자본이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다만, 초과분이 소득기반금액(inkomstbasbelopp)의 100배(2024년 기준 762만크로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자산소득으로 과세함

다) 기타자산 자본이득

□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자산의 자본이득은 투자자산(capital investment)과 개인자산(personal property)으로 구분하여 과세함[259)260)]

○ 기타자산은 「소득세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산으로 예술품, 가상자산, 보트, 개인용 가구, 원자재, 원자재 관련 옵션 및 선물, 저작권, 예술품 등이 이에 해당됨

○ 기타자산 중 투자자산 또는 개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함

○ 단지 가치가 있다고 하여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음

○ 투자자산의 자본이득은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며 자본손실은 70%가 공제될 수 있음

○ 개인자산의 자본이득은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되며, 연간 총 자본이득이 5만 크로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고 관련 자본손실은 공제되지 않음

- 자본이득은 양도가액에서 판매수수료 및 기타 처분비용과 양도가액의 25%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됨

---

259) 스웨덴 소득세법 Chapter 52.; Ferniss, 2023; Wolters Kluwer, pp. 73~74, https://www.skatteverket.se/privat/skatter/vardepapper/andratillgangar.4.233f91f71260075abe8800099480.html, 검색일자: 2024. 12. 27.

260) 스웨덴 소득세법 Chapter 52.; The Library of Congress, "Taxation of Cryptocurrency Block Rewards: Sweden," https://maint.loc.gov/law/help/cryptocurrency/block-rewards/sweden.php#_ftn3, 검색일자: 2024. 12. 26.

라) 자본손실

□ 자본손실은 자산소득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되, 자산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의 소득 및 부동산세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음[261]

○ 자산소득을 초과하는 자본손실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그 외의 소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부동산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10만크로나까지는 손실의 30%를, 10만크로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실의 21%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부동산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national real estate and municipal fee)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미공제 잔액은 이월되지 않음

2)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별도 규정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함

○ 상속인(수증자)은 피상속인(증여자)의 세무상 지위를 승계함[262]

□ 주된 거주주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적용을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시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스웨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은 사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되어야 함[263]

○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 목록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작성하여 이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261) IBFD, *Sweden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1.9. Losses - 1.9.2. Capital losses*(Last Reviewed: 15 October 2024)

262) 스웨덴 소득세법 Chapter 44 section 21; *EY, 2024a*, p. 422

263) EY, 2024a, p. 422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며, 폐지 직전 2004년의 상속세수는 26억 크로나로 전체 세수의 0.2%를 차지함

○ 폐지 직전 5년 동안 전체 세수 중 상속세수의 비중은 0.2~0.26%임

□ 상속·증여세 폐지 이후의 5개년 자료에 의하면 총세수는 감소하지 않았음

○ 상속·증여세수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적음

○ 상속·증여세의 폐지와 총세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총세수의 증가는 주로 소득세, 급여세 및 소비세의 증가에 기인함

〈표 Ⅳ-7〉 스웨덴의 세목별 세수 현황(2000~2010년)

(단위: 십억스웨덴크로나, %)

	총 세수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상속·증여세**		급여세	사회보장 기여금	소비세
		총액	자본 이득세[1)]		**금액**	**비중**			
2000	1,205	427	34	88	2.5	0.2%	50	307	292
2001	1,180	393	14	65	2.6	0.2%	51	331	302
2002	1,173	371	6	55	3.0	0.3%	55	339	315
2003	1,231	399	7	61	2.5	0.2%	60	343	329
2004	1,300	426	12	80	2.6	0.2%	61	352	340
2005	**1,387**	**457**	**23**	**102**	**1.1**	**0.1%**	**62**	**364**	**359**
2006	1,433	461	37	107	0.1	0.0%	79	365	378
2007	1,491	464	50	116	0.0	0.0%	83	389	401
2008	1,500	450	26	96	0.0	0.0%	125	373	421
2009	1,460	424	25	93	0.0	0.0%	123	357	427
2010	1,532	431	35	116	0.0	0.0%	108	385	455

주: 1) 개인의 자본이득세수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 자본이득세수도 함께 제시함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Details of tax revenue of Sweden."

4. 노르웨이

가. 배경

□ 노르웨이는 2014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함[264]

○ 1792년에 상속·증여세를 처음 도입한 후 1965년까지 최고세율 인상 및 비과세 한도액의 감소를 통해 과세를 강화함

○ 1965년에 상속세 비과세 한도액을 인상하였으나 1967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인하한 후 2008년까지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유지함

○ 2008년 조세개혁으로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증가하고, 세율을 크게 감소시킴

- 비과세 한도는 25만크로네에서 47만크로네[265]로 인상하였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55만 5천크로네에서 80만크로네로 인상함

○ 2014년 폐지 이전인 2013년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배우자 상속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최고 15%의 세율이 적용되었음[266]

- 배우자에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상속권이 없는 자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생존하는 배우자가 유산을 분배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 47만크로네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가족 간 상속·증여 시 세율은 6, 10%의 누진세율이, 가족 외의 경우 8,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267]

---

264) EY, 2024a, p. 312; 노르웨이 국세청(Skatteetaten), “Inheritance tax is abolished,”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get-the-taxes-right/gift-and-inheritance/inheritance-tax-is-abolished/, 검색일자: 2025. 2. 10.; Opjordsmoen, 2019, chapter 2

265) 약 6,086만원에 해당함(2025. 2. 11. 환율 기준)

266) EY, 2013, pp. 206~208

267) Ydstedt and Wollstad, 2015, p. 38

□ 노르웨이는 중산층의 상속·증여 세부담, 가업승계 지원, 낮은 세수의 이유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함

○ 거주 주택과 휴가용 주택을 상속받기 위해 저소득 및 중산층까지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중산층에게 부담되는 비용이 과세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큼[268]

- 2011년에서 2013년 동안 총 상속재산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임[269]

○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상속세 폐지가 가족기업의 세대 간 이전을 수월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함[270]

○ 낮은 상속·증여세 세수는 상속세 폐지를 결정하는 추가적인 이유가 됨[271]

- 상속·증여 세수는 2000년 기준 총세수 대비 0.6%였으며, 2008년 세제개혁을 통해 상속·증여 비과세 한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세율을 인하하여 2013년에는 0.18%의 비중을 차지함
- 노르웨이의 전체 세수입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2010년 기준)[272]
- 정부는 상속세 폐지에 따라 2014년에 12억 5천만크로네[273]의 세수 감소를 추정함[274][275]

---

268) Opjordsmoen, 2019, Chapter 2

269) 노르웨이 통계청, https://www.ssb.no/inntekt-og-forbruk/statistikker/arv/aar/; https://www.ssb.no/inntekt-og-forbruk/statistikker/arv/aar/2014-06-18, 검색일자: 2025. 2. 4.

270) 노르웨이 재무부, 2013

271) Nordseth, 2022, Chapter 5.1

272) Denk, 2012, p. 20

273) 2013년 상속·증여세수는 19억크로네임

274)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면서 과거 주식 등에 대해서만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방식에서 모든 자산에 대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개정함. 해당 조치의 상계효과를 반영한 추정치임

275) Andreassen et al., 2016, p. 26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인 및 수증자의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노르웨이 「소득세법」은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재산의 증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276)]

□ 노르웨이는 자산을 상속·증여하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추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산소득으로 과세함[277)]

○ 노르웨이는 연속방식을 채택하여 상속인(수증자)이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세무상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 한편, 노르웨이는 부유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속·증여로 인한 부의 증가에 대해서도 부유세가 부과됨[278)279)]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에 대해 부유세가 과세됨

- 예금, 주식, 자동차, 부동산, 가상자산 등의 자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순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함
- 자산은 일반적으로 평가연도 1월 1일의 추정 시장가치로 평가되며, 주된 거주 주택·주식 등의 경우에는 추정 시장가치에 할인을 적용하여 과세함

---

276) 노르웨이 소득세법(Skatteloven) section 5-50(3)

277) EY, 2024a, p. 312

278) EY, 2024a, p. 315; 노르웨이 국세청(Skatteetaten), "What are you liable to pay tax on in Norway?,"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foreign/are-you-intending-to-work-in-norway/the-tax-return/what-are-you-liable-to-pay-tax-on-in-norway/#:~:text=The%20income%20tax%20rate%20is,those%20with%20a%20high%20income., 검색일자: 2025. 2. 11.; IBFD, *Norway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5. Taxes on Capital - 5.1. Net wealth tax*(Last Reviewed: 25 November 2024)

279) 참고로 지방정부의 선택에 의해 매년 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율은 0.1~0.7%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결정함(*IBFD, Norway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5. Taxes on Capital - 5.2. Real estatetax*(Last Reviewed: 25 November 2024)

○ 순자산금액이 170만크로네[280]를 초과하는 경우 1%,(2천만크로네를 초과하는 경우는 1.1%)의 부유세가 부과됨[281]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1) 자본이득세 과세제도 개요[282]

□ 자본이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소득은 일반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 다만,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72배를 곱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므로 주식의 실질 세율은 37.84%임[283]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개인소득으로 분류되어 사회보장기여금 및 0~17.7%의 누진세율 체계의 개인소득세(trinnskatt)가 추가 과세됨[284]

- 사회보장기여금은 소득금액 및 소득유형에 따라 5.1~11%의 율로 과세됨[285]

□ 노르웨이는 자본이득 과세대상을 예시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규정으로 보임

○ 「소득세법」은 부동산 및 동산, 금융자산, 무형자산, 앞서 열거된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 등이 자본이득 과세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보충 및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86]

---

280) 약 2억 1,979만원(2025. 2. 10. 환율 기준)

281) IBFD, *Norway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5. Taxes on Capital - 5.1. Net wealth tax*(Last Reviewed: 25 November 2024)

282) IBFD, *Norway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7. Capital gains*(Last Reviewed: 25 November 2024)

283) EY, 2024b, p. 1185; 노르웨이 국세청(Skatteetaten), "Rate for: Gains, losses or dividends on shares," https://www.skatteetaten.no/en/rates/factor-for-upward-adjustment-of-gainloss-or-dividend-on-shares/, 검색일자: 2025. 2. 10.

284) 노르웨이 국세청(Skatteetaten), "Rate for: Bracket tax," https://www.skatteetaten.no/en/rates/bracket-tax/, 검색일자: 2025. 2. 11.

285) 노르웨이 국세청(Skatteetaten),"Rate for: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https://www.skatteetaten.no/en/rates/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 검색일자: 2025. 2. 11.

□ 자산의 처분, 교환, 손괴, 부담부증여(gift sale) 등 자산이 실현된 경우에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며 증여, 상속, 배우자 간 자산이전 등은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287]

○ 「소득세법」은 자산이 실현된 때에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처분, 교환, 손괴 등의 과세거래를 예시하고 있으며, 증여, 상속 등 실현으로 보지 않는 것은 열거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됨

○ 자산을 개별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만큼 취득가액이 감소됨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자본이득은 비과세되며, 휴가용 주택의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음

○ 개인이 1년 이상 소유하였고 처분일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비과세함

- 직장, 질병 및 기타 적격사유에 의하여 부재하는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개인이 5년 이상 소유하고 처분일로부터 8년 이내의 기간 중 최소 5년 동안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용 주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비과세함

□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에게 농장 또는 임야를 처분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이 비과세될 수 있음[288]

---

286) 노르웨이 소득세법 section 5-20.; Bloomberg Tax, *Portfolio 7280-2nd: Business Operations in Norway, XIII. Taxation of Resident Individuals, C. Determination of Gross Income, 5. Capital Gains*

287) 노르웨이 소득세법 section 9-2.; 노르웨이 국세청(Skatteetaten), "Tax rules - selling your own home,"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get-the-taxes-right/property-and-belongings/houses-property-and-plots-of-land/sale/sale-of-your-own-home/tax-rules/, 검색일자: 2025. 2. 11.

288) Bloomberg Tax, *Portfolio 7280-2nd: Business Operations in Norway, XIII. Taxation of Resident Individuals, C. Determination of Gross Income, 5. Capital Gains.*

○ (금액요건) 양도가액이 시가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기간요건)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농장 또는 임야를 처분할 것
- 처분일이 양도자의 취득일로부터 5년 초과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는 연도에 대해 자본이득의 5분의 1을 공제함

□ 부담부증여는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음[289]
○ 사업용자산 이외의 자산은 거래 시점에 과세됨

□ 자본손실은 일반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미공제 잔액은 무기한 이월공제할 수 있음[290]

2)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별도 규정

□ 상속인 및 수증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세무상 지위를 승계함[291]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함
- 그 외, 과세이연, 선입선출법 적용 등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증여자)의 세무상 지위를 승계함[292]
○ 참고로, 2014년 상속세 폐지 이전에는 상속인(수증자)은 피상속인(증여자)의 세무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음[293]
- 노르웨이 세법은 해당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1920년대

289) EY, 2024a, p. 314
290) IBFD, *Norway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9. Losses*(Last Reviewed: 25 November 2024)
291) EY, 2024a, pp. 312~313; 노르웨이 국세청(Skatteetaten), "Inheritance tax is abolished,"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get-the-taxes-right/gift-and-inheritance/inheritance-tax-is-abolished/, 검색일자: 2025. 2. 10.; 노르웨이 소득세법 section 10-33, 10-46 and section 9-7
292) Zimmer, 2014, pp. 96~97
293) Zimmer, 2014, pp. 94~95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적용됨

- 상속세 폐지 이전에도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방식으로의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세대교체 시의 세부담 증가, 상속인 간 유산 분배 시의 복잡도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정되지는 않았음
-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 승계방법은 2005년 배당 및 주식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정 시 주식 등에 한정하여 도입된 후 2014년 상속세 폐지에 따라 그 외의 자산에까지 적용됨

□ 다만, 주택, 휴가용 주택, 농장 및 임야를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증여자)이 직접 매각하는 경우 자본이득세가 비과세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 상속·증여에 따라 세효과가 변경되지 않도록 세제의 중립성을 위하여 특례규정을 둠

○ 만약,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후 해당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증여자)의 소유 및 사용기간을 승계하여 주택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294]

□ 상속인 및 수증자는 상속·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제출기한 전까지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여야 함[295]

○ 소득세 신고 시에 별도의 첨부자료로 피상속인 등의 취득가액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청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294) 노르웨이 국세청, “Continuity – sale of housing or other property which has been inherited or received as a gift,”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get-the-taxes-right/property-and-belongings/houses-property-and-plots-of-land/sale/sale-of-housing-or-other-property-thats-been-inherited-or-received-as-a-gift/continuity/, 검색일자: 2025. 2. 10.

295) 노르웨이 국세청, “Continuity – sale of housing or other property which has been inherited or received as a gift,”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get-the-taxes-right/property-and-belongings/houses-property-and-plots-of-land/sale/sale-of-housing-or-other-property-thats-been-inherited-or-received-as-a-gift/continuity/, 검색일자: 2025. 2. 10.

- 매매계약서, 토지등록부로부터의 자료, 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등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라. 상속·증여 세수 현황

□ 노르웨이는 2014년부터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으며, 2013년의 상속·증여세수는 22억 5천만크로네로 전체 세수의 0.18%를 차지함

○ 상속·증여세 폐지 직전 5년 동안 전체 세수 중 상속세수의 비중은 0.15~0.24%임

□ 총세수는 상속·증여세 폐지 이후인 2014년부터 2016년 중에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증가함

○ 상속·증여세의 폐지와 총세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2014년 상속·증여세 폐지 이후 5년 동안의 총세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였으며 법인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침

○ 상속·증여세수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상속·증여세 폐지가 총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표 Ⅳ-8〉 노르웨이의 세목별 세수액(2009~2019년)

(단위: 십억노르웨이크로네, %)

	총세수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상속·증여세		사회보장 기여금	소비세	기타
				합계	비중			
2009	1,002.16	242.09	217.82	2.43	0.24%	232.85	283.09	23.87
2010	1,087.36	257.22	255.70	2.38	0.22%	243.00	303.57	25.50
2011	1,174.87	271.97	300.63	1.75	0.15%	258.81	314.34	27.37
2012	1,231.73	290.28	306.27	1.89	0.15%	276.98	327.40	28.90
2013	1,227.45	306.37	253.76	2.25	0.18%	292.46	342.01	30.60
2014	**1,221.63**	**312.45**	**208.42**	**1.88**	0.15%	**312.48**	**354.92**	31.48
2015	1,200.03	336.13	140.18	0.30	0.02%	325.13	365.50	32.80

〈표 Ⅳ-8〉의 계속

	총세수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상속·증여세		사회보장 기여금	소비세	기타
				합계	비중			
2016	1,209.25	335.16	125.40	0.21	0.02%	330.86	382.39	35.24
2017	1,282.76	342.29	160.62	0.09	0.01%	339.85	399.42	40.49
2018	1,403.92	358.63	229.56	0.07	0.01%	357.32	416.60	41.75
2019	1,433.54	374.82	213.84	0.04	0.00%	377.06	423.71	44.07

주: 노르웨이는 연방정부에서만 상속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세수데이터만 제시함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Details of tax revenue in Norway."

5. 국제비교

가. 배경

□ 캐나다와 호주는 1970년대에, 스웨덴은 2004년 12월, 노르웨이는 2014년에 상속세를 폐지함

○ 캐나다는 1972년에 연방정부 단위의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며 지방정부는 1973년에서 1985년에 걸쳐 폐지함

○ 호주는 1977년 퀸즈랜드 주정부의 폐지를 시작으로 1979년에 연방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며 1984년에는 모든 주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함

○ 스웨덴은 2004년에, 노르웨이는 2014년에 상속세를 폐지함

□ 호주 및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배경으로는 배우자 상속분 과세에 대한 조세저항, 조세회피 만연 및 중산층에 대한 과세 확대가 있음

○ 호주는 1970년 과부에 대한 상속세 폐지 캠페인을 기점으로 상속세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세제의 결함으로 인한 조세회피 만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공제금액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이 심화되었음

- 1970년부터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폐지 주장이 계속되었으나 상속세 전면 폐지 전까지 유지되었음
- 상속세제의 결함으로 부유층의 조세회피가 만연하여 “자발적 세금”이라는 조소의 대상이 됨
- 공제금액에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아 폐지 직전 1977-78년 유산의 약 12%가 연방정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 중 소규모유산이 상당분을 차지함

○ 스웨덴은 상속세 폐지 약 1년 전까지도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며 부유층의 조세회피 만연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비중이 높았음

-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2004년 1월부터 상속세가 비과세되었으며 상속세는 2004년 12월에 전격 폐지됨
- 부유층이 상속세제의 복잡한 감면규정 및 전략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함에 따라 정당성이 퇴색함
- 상속세 인적공제금액은 1987년 이후로 동일하였으며 20세기 후반 스웨덴 국민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상속세의 영향을 받음

□ 캐나다는 개인소득세제에 대한 개편이 상속세의 폐지에 영향을 끼침

○ 캐나다는 1967년 이후 개인소득세제 개편을 논의하였으며 1972년 자본이득을 포함한 포괄적 종합소득과세제도의 도입이 상속세의 폐지에 영향을 끼침

- 캐나다는 당초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았음
-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면서 “가장 불편한 시기(즉, 애도하는 사망일)”에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동시 부과에 대한 부담으로 연방정부의 상속세는 폐지하고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됨

□ 노르웨이는 중산층의 과세 비중 확대 문제, 가업 및 세대 간 자산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함

○ 전체 상속재산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등 중산층의 과세 비중이 확대됨

- 2011-2013년 동안 총 상속재산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임
- 상속세 비과세금액이 2008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으며 폐지 전년 비과세금액은 47만크로네에 불과함[296]

□ 상속세의 낮은 세수 중요도는 상속세 폐지 결정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데 영향을 끼침

○ 캐나다의 폐지 이전 5년간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 비중은 0.9~1.1% 수준임

○ 호주의 1978년 기준 전체 세수에서 상속·증여세 비중은 약 1%임

○ 스웨덴의 1972-2005년 기간 중 전체 세수에서 상속·증여세의 비중은 0.2%임

○ 노르웨이의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 비중은 2009-2014년 기준 0.15~0.24% 수준임

〈표 IV-9〉 주요국의 상속세제 비운영 배경

구분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폐지연도	1972년[1)]	1979년[1)]	2004년 12월	2014년
주요 폐지배경	·1972년 자본이득세 도입 ·낮은 세수 중요도	·배우자 상속분 과세에 대한 저항 ·소규모유산의 과세 증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부과 ·농장소유주의 반발 ·조세회피의 용이	·부유층의 조세회피에 따른 상속세의 정당성 감소 ·경제성장을 위한 유인책 ·세무행정비용 대비 낮은 세수비중	·중산층의 상속·증여 세부담 증가 ·가업승계지원 ·세무행정비용 대비 낮은 세수비중
상속세 세수비중	1967-1971년 기준 전체 세수의 0.9~1.1% 수준	1978년 기준 전체 세수의 약 1%	1972-2005년 전체 세수의 0.2% 수준	2009-2014년 기준 전체 세수의 0.15~0.24% 수준
기타	-	-	2004년 1월 배우자 상속분 상속세 폐지	-

주: 1) 캐나다와 호주의 폐지연도는 연방정부의 폐지연도를 기재함
자료: 본문 제IV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96) 2025년 2월 11일 기준 약 6,086만원임

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주요국 모두 상속·증여로 인한 상속인(수증자)의 부의 증가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

○ 주요국 모두 상속·증여로 취득한 현금,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 등 모든 종류의 부의 증가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

- 따라서 자산유형에 불문하고 상속·증여시점에 상속인(수증자)에게 조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주요국 모두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본자산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만 과세 시점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상이함

○ 캐나다는 상속·증여를 처분으로 간주하여 상속·증여 시점에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와 피상속인 등의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즉, 캐나다는 간주실현방식을 채택함

○ 호주는 상속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으나 증여 시점에는 일반 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즉, 상속은 과세이연방식 및 취득가액 승계방식을, 증여는 간주실현방식을 채택함
- 당초 상속과 증여 모두 간주실현방식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상속 시 간주실현 자본이득세를 상속세로 오인한 대중적 반감을 고려하여 상속과 증여의 자본이득 과세 시점을 달리 하였다는 의견이 있음
- 상속은 원칙적으로 과세이연하지만, 면세단체, 비거주자 등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스웨덴 및 노르웨이는 상속·증여 모두 상속·증여 시점에 피상속인(증여자)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과세하지 않음

-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미실현이익에 과세함

□ 한편, 노르웨이는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속·증여로 증가한 자산에 대해서도 부유세가 과세됨

〈표 IV-10〉 주요국의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문제

구분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소득세 과세 여부 (상속인 등)	×	×	×	×
자본이득세 과세 여부 (피상속인 등)	○ (간주실현)	상속: × (과세이연) 증여: ○ (간주실현)	× (과세이연)	× (과세이연)

자료: 본문 제IV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297]

1) 자본이득세 과세제도 개요

□ 주요국 중 캐나다, 호주는 자본이득을 종합과세하는 반면,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분류과세함

○ 캐나다와 호주는 자본이득을 포함한 개인 납세자의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함

○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원적 소득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서 자본이득을 분류과세하지만 자본이득과 통산되는 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 스웨덴은 이자소득·배당소득·자본이득 등을 자본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함
- 노르웨이는 자본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연금소득은 구분하여 추가 과세하는 형태의 이원적 소득세 제도를 운영함

□ 캐나다와 호주는 자본이득을 누진세율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단일세율로 과세함

○ 캐나다는 소득구간별 15~33%의 누진세율로, 호주는 0~45%의 누진세율로 과세함

- 캐나다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최고 54.87%의 소득세율이 적용됨

297) 캐나다 및 호주(증여 사례)는 상속·증여 시점에 자본이득이 과세되지만 비교의 용이를 위해 본 문단에서 비교분석함

○ 스웨덴은 30%, 노르웨이는 22%의 단일세율로 과세함

□ 주요국 모두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캐나다·호주·노르웨이의 자본이득세 과세사건의 개념에는 유상거래뿐만 아니라 무상거래가 포섭됨

○ 캐나다 「소득세법」은 별도의 예시 없이 포괄적으로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이득 과세거래는 유상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무상거래를 처분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호주 「소득세법」은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본이득세 사건은 유상거래 이외 자산의 증여, 교환, 손괴 등 무상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은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상속은 원칙적으로 자본이득세 과세사건에 해당하지만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스웨덴은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처분은 매매, 교환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무상 이전거래가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 노르웨이는 자산이 실현된 때에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손괴, 파손 등의 비자발적 무상 이전거래도 해당됨

□ 호주는 보유기간에 따라 자본이득 중 과세대상 금액을 달리하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자산유형에 따라 자본이득 중 과세대상 금액을 달리함

○ 호주는 1년을 기준으로 단기 보유자산은 전체 자본이득에 대해, 장기 보유자산은 자본이득 중 50%를 과세대상으로 함

○ 스웨덴은 주택, 사업용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유형별로 자본이득 중 과세대상 비율을 달리함

- 개인 주거용 부동산은 자본이득의 30분의 22, 사업용 부동산은 자본이득의 90%, 상장주식은 자본이득의 100%, 비상장주식은 자본이득의 6분의 5를 과세함

○ 노르웨이는 원칙적으로 전체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함
- 2024년, 2025년에 적용되는 비율은 1.72임

○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의 자본이득 중 50%만을 과세대상으로 함
- 2026년부터는 자본이득이 25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6.67%를 과세대상으로 함

□ 캐나다와 호주는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에서만 상계할 수 있으나,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자본소득에서 통산 후 미공제잔액을 다른 유형의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음

○ 스웨덴은 자산소득을 초과하는 손실액의 최고 30% 상당액을 근로소득 등과 부동산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는 미공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만, 스웨덴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주요국 모두 주된 거주주택의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두고 있음

○ 캐나다와 호주는 거주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을 비과세함

○ 스웨덴은 대체주택 취득목적으로 소유기간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주된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서 자본이득이 5만크로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함
- 신규 취득한 주택을 추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노르웨이는 소유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휴가용 주택의 자본이득을 비과세함

□ 주요국 모두 소규모사업의 양도 시 자본이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캐나다는 소기업주식 및 농·어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평생 125만캐나다달러

를 한도로 자본이득을 공제하거나 과세이연을 허용함

○ 호주는 소규모사업 양도 시 자본이득 비과세, 감면,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함
- 15년 이상 운영한 소규모사업 양도 시 자본이득에 비과세함
- 사업자산 자본이득은 50%를 감면함
- 은퇴의 경우 평생 50만호주달러를 한도 내 자본이득에 비과세함
- 사업용 자산 매각대금으로 대체자산 취득 시 자본이득의 과세를 이연함

○ 스웨덴은 요건을 만족하는 소규모사업체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한도금액 내 자본이득 중 3분의 1은 비과세함

○ 노르웨이는 법정 상속권이 있는 자에게 사업용자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하며, 법정 상속권이 있는 자에게 농업 또는 임야를 저가매각하는 경우 자본이득을 비과세함

□ 주요국 중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배우자 간 자산이전거래를 과세이연함

○ 노르웨이는 배우자 간 자산 이전은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표 Ⅳ-11〉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요(일반사항)

구분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과세방식	종합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활동소득과 자본소득 분류)	분류과세 (일반소득과 근로소득의 분류)
세율	15~33% 누진세율 (지방세 포함 시 최고 54.87%)	0~45% 누진세율	30%	22%
과세대상 규정방식	포괄적 규정	포괄적 규정	포괄적 규정	포괄적 규정
자본이득 과세사건	유·무상 거래를 포괄적으로 정의	유·무상 거래를 포괄적으로 정의	포괄적으로 정의	유·무상 거래를 포괄적으로 정의
과세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50%[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50%[2]	자산유형별 상이[3]	·원칙: (양도가액 - 취득가액) ·예외: 주식은 자본이득의 1.72배

〈표 Ⅳ-11〉의 계속

구분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결손금	·자본이득 내에서 상계 ·3년 소급공제, 무기한 이월공제 가능	·자본이득 내에서 상계 ·무기한 이월공제	·자산소득 내에서 상계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외의 소득 및 부동산세 등에서 공제 가능 ·이월공제 불가	·자본이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일반소득 내에서 상계 ·무기한 이월공제
주요 특례 규정	·주거주지 처분 시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	·주거주지 처분 시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주지 처분 시 과세이연 가능[4]	·소유기간·보유기간 요건 충족하는 주거주지 처분시 비과세
	·적격 소기업 주식, 적격 농·어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평생 발생하는 자본이득에서 125만 캐나다달러를 한도로 공제	·적격 소규모사업체의 자본이득은 비과세, 50% 감면, 과세이연 등의 혜택 적용	·폐쇄회사의 적격 주주의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자본이득의 1/3은 비과세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에게 사업용자산 부담부증여 시 과세이연 가능
	·배우자 간 양도거래, 농·어업자산의 세대간 이전, 소규모기업 주식 처분하고 재투자 시 과세이연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에게 요건을 충족하는 농장 또는 임야를 저가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배우자 간 양도거래 과세이연

주: 1) 캐나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본이득이 25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의 66.67%를 과세대상으로 함
2) 호주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은 자본이득의 50%를,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은 자본이득의 100%를 과세함
3) 개인 주거용 부동산은 자본이득의 22/30, 사업용 부동산은 자본이득의 90%, 상장주식은 자본이득의 100%, 비상장주식은 자본이득의 5/6를 과세함
4)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주지 처분 시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처분일까지 자본이득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자료: 본문 제Ⅳ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상속·증여 자산 양도 시 특별 규정

□ 주요국 중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속·증여로 받은 자산의 양도 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방식을 채택함

○ 상속세제를 폐지하였으므로 상속·증여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됨

- 상속세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와 미실현이익에 모두 과세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 예로, 노르웨이는 상속세제 폐지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 상향 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상속세제 폐지 시점에 피상속인 등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방식을 전면 도입함

○ 단, 호주는 증여 시점의 시가로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 시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로 조정함

○ 캐나다는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로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로 조정됨

□ 주요국 모두 배우자에게 상속·증여 시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별도의 자본이득 과세 특례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캐나다는 자본이득세 일반규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 과세를 이연함

○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나 배우자에게 한 상속·증여는 자본이득세 과세를 이연함

- 캐나다는 배우자 간의 유상양도거래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를 과세이연함

○ 스웨덴, 노르웨이는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기 때문에 캐나다와 같이 배우자에게만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호주는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하지만 배우자 간 증여거래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호주는 배우자 간의 유상양도거래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주요국 중 호주, 노르웨이는 상속받은 거주 주택에 대해 자본이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호주는 피상속인의 거주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① 사망 시점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조정, ② 거주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상속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자본이득 비과세 적용, ③ 피상속인의 거주·소유기간도 함께 승계하는 특례를 적용함

- 일반적으로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피상속인이 취득부대비용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사망 시점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조정함
-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기간 내내 거주해야 하나 상속받은 주택은 2년 이내 처분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상속받은 주택을 주된 거주주택으로 사용하다 처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주거주지로 사용한 기간에 따른 자본이득 비과세금액을 계산함

○ 노르웨이는 상속·증여 시점에 상속·증여받은 주택·휴가용 별장이 자본이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로 상향 조정하거나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거주·소유기간을 승계하는 특례를 제공함

○ 캐나다는 상속·증여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별도의 자본이득 과세특례 규정은 없으며, 일반 거주주택에 적용되는 자본이득 비과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

- 상속·증여 시점에 처분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스웨덴은 거주·소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의 양도 시 과세이연 혜택을 두고 있으며,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거주·소유기간에 대한 특례는 확인되지 않음

□ 주요국 중 호주, 노르웨이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농·어업 등 자산의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 과세특례가 적용됨

○ 호주는 상속인이 소규모사업을 승계받지 않고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규모사업에 적용하는 자본이득 비과세, 자본이득 감면, 자본이득 과세이연의 과세특례를 허용함

○ 노르웨이는 상속·증여 시점에 상속·증여받은 농장·임야가 자본이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허용함

○ 캐나다는 일반 소규모기업의 주식 및 농·어업 자산에 적용하는 자본이득 과세이연 특례(최대 9년간 과세이연 허용)를 상속·증여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주요국 중 캐나다, 호주는 자선단체에 기부 시 자본이득에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이 있음

○ 캐나다는 상장주식의 기부 시 자본이득에 비과세함

- 비상장주식의 기부 시에는 자본이득이 과세되나 대부분의 경우 기부자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자본이득 과세가 상쇄됨

○ 또한, 캐나다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선단체에 증권(주식, 파트너십 지분)을 기부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자본이득의 과세이연이 허용됨

- 단, 특수관계가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 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음[298)]

○ 호주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가 가능한 단체에 상속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비과세함

□ 주요국 모두 상속·증여재산의 자본이득 과세 시 피상속인의 부채를 고려하는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주요국 모두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미실현이익에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피상속인 등의 부채가액을 승계하는 제도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이득 과세는 자산의 처분으로 실현되는 이익에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는 고려하지 않음

298) 특수관계가 없어지는 경우 자본이득에 과세하며, 기부금 세액공제가 허용됨

□ 주요국 모두 피상속인(증여자) 이월 자본손실을 승계하는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자본손실의 결손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 주요국 모두 상속·증여 시 신고 의무가 있으나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속·증여 당시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음

○ 캐나다는 피상속인의 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까지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치 증가분을 포함한 소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음

○ 호주는 상속인이 자선단체와 같이 조세혜택을 받는 법인 또는 외국인이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과세관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함

○ 스웨덴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자산, 부채 모두 포함)을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함

○ 노르웨이는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서에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

○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속·증여 시점에 과세되지 않음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은 향후 취득가액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Ⅳ-12〉 주요국의 상속·증여에 대한 자본이득세 특별 규정

구분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취득가액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	상속: 피상속인 등의 취득가액 증여: 증여 시점의 시가	피상속인 등의 취득가액	피상속인 등의 취득가액
배우자 특례규정	확인되지 않음[1]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주거주지 특례규정	확인되지 않음[2]	• 피상속인의 주거주지는 사망일 시가로 승계 • 피상속인의 주거주지를 상속인의 주거주지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비과세 • 피상속인의 소유·거주기간도 승계	확인되지 않음	•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의 주거주지·휴양주택·농장·임야는 사망일 시가로 승계 가능 • 피상속인 등의 주거주지 등을 피상속인 등의 취득가액 승계 시 소유·사용기간 승계
농업 등에 대한 특례규정	확인되지 않음[2]	소규모사업체 상속 후 사업승계 없이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소규모사업체에 대한 자본이득 특례 적용	확인되지 않음	
소규모기업에 대한 특례규정	확인되지 않음[2]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자선단체 등에 대한 특례규정	• 자선단체, 국가 등에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자본이득 비과세 • 특수관계가 있는 자선단체 등에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자본이득 과세이연 허용[4]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에 상속하는 경우 자본이득 비과세[3]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부채승계분의 고려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결손금	확인되지 않음	×	×	확인되지 않음

〈표 IV-12〉의 계속

구분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신고의무	-[4]	상속인이 조세 혜택이 부여된 단체 및 외국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신고의무 있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목록 사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소득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첨부하여 신고

주: 1) 자본이득세 일반규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자산 이전 시 자본이득의 과세를 이연함. 다만,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에 의하여 자본이득세의 납부가 가능함
2) 캐나다는 상속·증여를 양도거래로 간주하므로 주거주지, 소규모기업 주식, 농·어업용 자산의 상속·증여 시에도 일반 자산 양도 시 적용하는 자본이득 과세특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
3) 원칙적으로 면세단체에 상속되는 경우 상속 시점에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나 이들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함
4) 상속·증여 시점에 과세되므로 일반 소득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함

자료: 본문 제IV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V. 결론 및 시사점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증여자산에 대한 과세는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 과세로 구분됨

○ 자산의 무상 이전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또는 개인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 상속·증여 시점 피상속인(증여자)이 보유한 기간 동안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가. 상속·증여자산에 대한 과세

□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은 상속·증여 시점 상속인(수증자)의 부의 증가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14개국은 과세하지 않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국은 상속·증여 시점에 상속·증여세 또는 개인소득세를 과세함

-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는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반면 증여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과세함

○ 반면, 호주, 캐나다, 라트비아 등 14개국은 과세하고 있지 않음

- 호주, 캐나다 등 10개국은 과거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라트비아 등 4개국은 상속·증여세를 운영한 적이 없음
- 라트비아와 체코(증여에 한정)는 증여로 인한 부의 증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반면, 그 외의 국가들은 과세하지 않음

○ 미국과 이탈리아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으나 재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속세 폐지 국가들은 과세대상 중 중산층 비중 증가에 따른 상속·증여세의 정당성 훼손, 집행비용 대비 낮은 세수 비중 등을 주된 폐지 배경으로 삼고 있음

○ 면세점 대비 평균적인 자산가격 수준이 상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높아지게 됨

○ 반면, 부유층은 상속세제의 복잡한 감면규정 및 조세전략을 사용하여 상속세를 회피함에 따라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는 상속·증여세의 정당성이 퇴색됨

○ 상속세의 낮은 세수 중요도는 상속세 폐지 결정을 용이하게 함

○ 그 외 개인소득세제의 개편, 경제성장을 위한 가업 및 세대 간 자산이전 지원정책도 폐지에 영향을 끼침

- 캐나다는 당초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았으나 자본이득을 포함한 포괄적 종합소득과세제도의 도입이 상속세의 폐지에 영향을 끼침
- 스웨덴,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가업 및 세대 간 자산이전의 지원이 상속세 폐지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됨

□ 상속·증여세제 비운영에 따른 세수효과는 자산처분 시기, 자산유형 등에 따라 (+)(-)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상속·증여세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증여 시점 부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므로 세수 감소가 발생함

○ 상속·증여로 승계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점에서 취득가액 조정을 통한 세수 증가효과가 있을 것임

-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를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므로 상속세제 비운영 시에는 과거 과세되지 않았던 피상속인(증여자) 보유기간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임

○ 다만, 상속·증여로 승계받은 자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간주실현방식이 아닌 과세이연방식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조정을 통한 세수 증가효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상속·증여로 승계받은 자산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이 무기한 가능함

□ 또한, 상속·증여세제 비운영에 따른 개인별 세부담 변화는 자산규모, 자산유형, 처분시기에 따라 상이할 것임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한도 내의 자산을 상속받아 상속·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던 납세자의 경우 총체적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가 아닌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상속재산 중 부채 비중이 낮은 경우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자산의 비중이 높은 납세자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임

- 상속세는 순자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상속세액 계산 시에 부채가 고려되지만,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상속으로 승계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에 부채가 고려되지 않아 상속재산 중 부채의 비중이 낮은 납세자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임

- 현행 양도소득세는 열거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 비중이 높은 납세자의 총체적 세부담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임

○ 상속재산 중 양도소득세율이 낮은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총체적 세부담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임

- 현행 양도소득세는 자산유형별로 양도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나.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 상속·증여자산의 자본이득 과세와 관련하여 ①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시기, ② 승계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의 과세대상 금액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 (과세시기) 간주실현방식 또는 과세이연방식

○ (과세대상 금액) 취득가액 승계과세 또는 취득가액 상향과세

- 과세이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차이

□ 자료 확인이 가능한 OECD 회원국 중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 3개국만이 간주실현방식에 의해 상속 시점에 피상속인의 미실현 자본이득을 과세함

○ 캐나다는 상속·증여세제를 운영하지 않는 반면, 덴마크와 헝가리는 상속세제를 운영하고 있어 상속 시점에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동시에 부담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상속 시점에 피상속인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과세이연 방식에 의해 피상속인(증여자) 보유기간의 미실현 자본이득을 과세함

○ 상속세제 비운영 회원국 중 캐나다만 간주실현방식을 채택함

○ 미실현이익의 과세, 재산평가의 어려움 및 일반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로 오인하는 문제[299] 등이 고려된 현실적 선택으로 보임

- 과세이연방식은 납세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산동결효과, 미실현이익의 무한정 과세이연 및 취득가액 입증의 어려움이라는 단점이 있음

- 반면, 간주실현방식은 자산동결효과 감소, 자본이득 과세의 무한정 이연 방지,

---

299) 예를 들어 호주는 당초 간주실현방식에 의하여 상속·증여 시점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을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증여세에 대한 대중적 저항 및 상속·증여세와 상속·증여 시점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일반 납세자의 오해를 반영하여 증여에 대해서만 간주실현방식을 채택함

소득귀속 관점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재산 평가의 어려움이라는 단점이 있음

□ 참고로, 일부 국가는 상속자산과 증여자산의 미실현 자본이득의 과세시기를 달리하고 있음

○ 상속과 달리 증여는 납세자가 부의 이전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증여에 대해서는 간주실현방식,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방식으로 과세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조사국 중 호주는 상속과 증여의 미실현이익 과세시기를 달리함

○ 상속과 증여의 과세시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은 제도의 통일성, 자산이전 방법별 조세 중립성 확보 및 증여세가 태생적으로 상속세의 보완 역할을 하는 점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음

- 조사국 중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속과 증여의 과세시기를 동일하게 운영함

□ 만약, 간주실현방식에 의해서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배우자 및 적격기부금단체에 대한 이연과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에게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 과세이연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해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을 과세하는 경우에는 총체적 세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배우자간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세회피 가능성 및 유상양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배우자는 경제공동체로서 부의 수평적 이전에 해당하는바, 잔존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자본이득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됨

- 간주실현방식을 채택한 캐나다는 배우자 간 상속·증여를 포함한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에 의해 과세이연함

○ 기부 장려를 위해서 적격단체에 대한 기부 시 자본이득 비과세·이연 규정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적격단체에 기부 시 상속·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간주실현방식에 의해 미실현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경우, 기부 시점에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이 발생하며 기부와 일반 상속·증여거래의 세부담에 큰 차이가 없어 기부 유인이 떨어짐[300]
- 간주실현방식을 채택한 캐나다는 적격단체에 대한 기부에 대해 자본이득 비과세 및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301][302]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처분 시 양도소득세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속·증여 시점에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 과세이연 및 취득가액 승계방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취득가액 입증이 중요하므로. 상속·증여 시점에 상속·증여받는 재산목록 및 취득가액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면 취득가액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조사국 중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에도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음

---

300) 종합소득세액 산정 시에 기부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한도가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되므로 한도계산 시에 고려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과세이연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기부 시점에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기부와 일반 상속·증여거래의 세부담에 큰 차이가 없다는 문제는 동일함

301) 캐나다의 경우 적격 면세단체에 상장주식 기부 시 자본이득을 비과세하고, 비상장주식 기부 시 자본이득에 과세하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자본이득세를 상쇄하는 규정을 두어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의 기부 시 비과세함

302) 호주는 원칙적으로 상속은 과세이연방식으로 과세하지만 면세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간주실현방식에 의해 상속 시점에 과세함. 다만, 면세단체가 기부금 공제단체이며 납세자가 상속 이외의 방법에 의해 이전하였다면 기부금을 공제받았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방법은 피상속인(증여자)의 자산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미실현이익의 과세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 승계과세(Carry-over basis)와 취득가액 상향과세(Step-up basis)로 구분됨

○ 취득가액 승계는 상속·증여자산의 양도 시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과세됨

- 간주실현방식과 같이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나 과세시기에 차이가 있음

○ 취득가액 상향은 상속·증여자산 양도 시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은 비과세됨

□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속세를 과세하는 국가 중 과반수의 국가[303]는 취득가액 상향과세 방법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자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주요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피상속인의 미실현이익을 비과세함

○ 하지만 독일, 일본 등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에도 취득가액 승계과세 방법을 적용하는 국가가 다수 확인됨[304]

○ 취득가액 승계과세 방법은 동일한 상속·증여재산에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이중과세로 볼 수도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상이하며 경제적 이중과세가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음[305]

303)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OECD 회원국(총 24개국) 중 자료 활용이 가능한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18개국 중 10개국은 취득가액 상향 조정을 하여 피상속인의 미실현이익에 비과세함

304) 자료 활용이 가능한 상속·증여세 부과국(총 18개국) 중 8개국은 상속재산 양도 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자본이득을 과세함

305) 오윤, 2012, pp. 211~212; Dodge, 2001, pp. 432~433

□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자본이득을 과세함

○ 자료 확인이 가능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OECD 회원국 중 캐나다, 라트비아를 제외한 호주,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은 취득가액 승계방법에 의해 과세함

- 캐나다는 피상속인의 미실현이익을 과세하지만 간주실현방식을 적용하므로 취득가액 승계방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가 취득가액 상향과세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일반 유상양도거래와 비교할 때 세수일실이 발생하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남

□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자본이득만을 과세하는 국가의 양도소득세제에서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일반적이지는 않음

○ 상속·증여세는 부에 대한 과세이고, 자본이득세는 자산의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로 공제항목 등 근본적인 과세체계에 차이가 있음

- 상속·증여세는 부에 대한 과세로 물려받은 순자산가액에 과세하고,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과세제도가 설계됨[306]
- 자본이득세는 자산의 매각차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취득가액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공제를 허용하며, 결집효과 해소 목적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공제가 허용됨

○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자본이득만을 과세하는 국가에서는 상속·증여세 과세의 공제항목을 자본이득 과세 시에 공제하고 있지 않음

- 예로,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부채금액, 배우자 간 상속가액 등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나 주요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자본이득 과세 시에는 공제되지 않음

306) 순 상속자산가액에 과세하기 위해 부채, 기부금, 장례비용 등의 공제를 허용하며,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세 공제제도를 운영함

○ 다만, 세무상 지위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자산 보유·사용기간의 승계는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이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조세혜택이 주어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증여자)의 기간도 합산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사국가 중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피상속인의 자산 보유기간도 고려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함

□ 취득가액 승계과세로 전환 시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필요경비 개산공제 또는 취등록세 납부자료를 장기 보관할 필요가 있음

○ 취득가액 승계과세로 전환 시 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가액 입증이 중요함

○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환산취득가액 규정의 준용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재로 최초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울 수 있고, 과거에 취득한 자산은 전산자료의 미비로 취득가액 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 자산이 여러 세대를 걸쳐 이전되는 경우에도 정확한 취득부대비용을 알기 어려울 수 있어 기타 필요경비 개산공제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향후 상속·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취등록세 납부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과세를 위해 취등록세 납부자료의 장기 보관을 고려해볼 수 있음

참고문헌

〈국내 문헌〉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2020』, 2020.

_____, 「국세통계로 풀어보는 생활 속의 세금 이야기」, 보도자료, 2023. 6. 29

_____,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2024』, 2024a.

_____, 『2024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2024b.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7. 25.

_____,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2025. 3. 12.

신상화·송은주·이성현,『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과세 합리화 방안』, 세법연구 19-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오윤,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8권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2.

이준봉, 『주요국의 조세제도 - 캐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이창희, 『세법강의 제21판』, 박영사, 2023.

현진권, 「스웨덴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성」, 『재정학연구』, 제3권 제2호, 2010.

〈외국 문헌〉

Andreassen, M, *Arveavgift: en deskriptiv analyse av konsekvensene ved opphevingen av arveavgiftsloven i Norge*, Master Thesis, NORGES HANDELSHØYSKOLE, 2016

Akgun, O., B. Cournède and J. M. Fournier, "The effects of the tax mix on

inequality and growth,"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447, 2017.

Alstott, A. L., "Equal opportunity and inheritance taxation," *Public Law Working Paper*, No. 117, Yale Law School, 2007.

Bloomberg Tax, *Portfolio 7370-1st: Business Operations in Sweden, X. Taxation of Individuals — Residents, C. Determination of Gross Income/Earned Income, 3. Capital Income, c. Holdings in a Closely-held Company,* 2025.

_____, *Portfolio 7280-2nd: Business Operations in Norway, XIII. Taxation of Resident Individuals, C. Determination of Gross Income, 5. Capital Gains,* 2025.

Boadway, R., E. Chamberlain and C. Emmerson, "Taxation of wealth and wealth transfers," *In Dimensions of Tax Design: The Mirrlees Revie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Tax Treatment of Capital Gains at Death*, 2021.

Cowell, F., D. Van de Gaer and C. He, "Inheritance taxation: Redistribution and predistribution," *Inequality, Taxa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26, 2017.

Denk, O., "Tax reform in Norway: A focus on capital taxation,"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950, OECD, 2012.

Dodge, J. M., "A deemed realization approach is superior to carryover basis (and avoids most of the problems of the estate and gift tax)." *Tax Law Review*, 54(4), 2001.

Duff, D. G., "The abolition of wealth transfer taxes: Lessons from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Allard Faculty Publications*, The Peter A. Allard School of Law Allard Research Commons. 2005.

Elinder, M., O. Erixson, S. Escobar and H. Ohlsson, "Estates, bequests, and inheritances in Sweden – A look into the Belinda databases," *Working Paper 2014:14*, Uppsala Center for Fiscal Studies, 2014.

Erixson, O., "Health responses to a wealth shock: Evidence from a Swedish tax reform,"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0, 2017.

Escobar, S., "Inheritance tax evasion: Spousal bequests and under-reporting of inheritances in Sweden," *Uppsala Center of Fiscal Studies*, 2017.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3*, 2013.

_____,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24a.

_____,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23-24*, 2024b.

Geu, T. E., "Professor T.S. Adams (1873-1933) on federal taxation: Déjà vu all over again," *Akron Tax Journal*, 10(2), 1993.

Gunnarsson, Å. and M. Eriksson, "Discussion paper on tax policy and tax principles in Sweden, 1902-2016.", *FairTax Working Paper Series*, No. 8. 2017.

IBFD, *Country Tax Guide –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2024.

_____, *Country Tax Guide – 1. Individual Income Tax*, 2024.

JOINT COMMITTEE ON TAXATION(JCT), "BACKGROUND AND ISSUES RELATING TO CARRYOVER BASIS", 1979.

Klitgaard, M. B. and T. Paster, "How governments respond to business demands for tax cuts: A study of corporate and inheritance tax reforms in Austria and Sweden,"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44(1), 2021.

Lin, J., J. Mangan and F. Milosavljevic, *Back from the dead: Australian inheritance tax*.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2018.

Mockler, E. J. and D. B. Fields, *Studies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1964.

Nordseth, B, *Inheritance, tax morale and fairnes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Oslo, 2022.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

Opjordsmoen, J. M., *Taxation of inheritance: Evidence from Norwa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Oslo, 2019.

Pedrick, W. H., "Oh, to die Down Under – Abolition of death and gift duties in Australia," *Tax Lawyer*, 30(1), 1981.

Raspin, I., L. Freshwater and M. Morris, "Death and income tax – some discrete issues: part 2," *Taxation in Australia*, 54(9), The Tax Institute, 2020.

_____, "Death duties again? Really?," *Taxation in Australia*, 55(6), The Tax Institute, 2021.

Schmalbeck, R., J. A. Soled and K. D. Thomas, "Advocating a carryover tax basis regime," *Notre Dame Law Review*, 93(1). 2017.

Smith, J. P., "Taxing popularity: The story of taxation in Australia," *Research Study 43*, Australian Tax Research Foundation, 2004.

Stevanato, D., "Should inheritance be taxed as income?," *World Tax Journal*, 13(4), IBFD, 2021.

Sutton, D. and J. Parket, "The case for removing roll-over of liability to tax on capital gains at death," *Australian Tax Forum*, 37(3), The Tax Institute. 2022.

Taxnotes, *Joint Committee Report JCS-33-76: General Explanation of the Tax Reform Act of 1976*, 1976

Tilley, P., "1985 reform of the Australian tax system," *TTPI-Working Paper 7/2021*,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Tax and Transfer Policy Institute, 2021.

Wolters Kluwer, *Canadian Master Tax Guide 74th Edition, 2024*, 2024a.

_____, *Australian Master Tax Guide 74th Edition 2024*, 2024b.

Wykman, N., *Capital taxation of owners of closely held corporations in Sweden, 1991 to 2018*, Örebr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2019.

Ydstedt, A. and A. Wollstad, *Ten years without the Swedish inheritance tax*. 2015.

Zelenak, L., "Taxing gains at death," *Vanderbilt Law Review*, 46(2). 1993.

Zimmer, F., "Generation shifting and the principle of continuity in Norwegian tax law," *Nordic Tax Journal*, 2014(1), 2014.

캐나다 국세청(CRA), *Capital Gains 2023*, 2023a.

_____, *T1-2023, Capital Gains (or losses) - Schedule 3*, 2023b.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Budget 2024*, 2024.

호주 연방 재무부(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Australia's future tax system Report to the Treasurer*, Part Two Detailed analysis volume 1 of 2, 2009.

〈웹사이트〉

BDO, https://www.bdo.ca/insights/farm-transition-is-your-farm-offside

CR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

OECD, https://data-explorer.oecd.org/

노르웨이 국세청(Skatteetaten), https://www.skatteetaten.no/en/

노르웨이 재무부(Finansdepartementet), https://www.regjeringen.no/no/

노르웨이 통계청, https://www.ssb.no/

스웨덴 국세청(skatteverket), https://www.skatteverket.se/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capital-gains-tax/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en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호주 연방재무부,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

세법연구 24-07

주요국의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발 행 2024년 12월

저 자 권성오 · 홍성희 · 김민경

발행인 이 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0 1 4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인쇄 ㈜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ISBN 979-11-6655-350-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